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 6.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Ⅰ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과 제안경위□

- 지방재정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 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관련 규칙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3년 5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3조 408억원을 증액한 50조 2.828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 11	<u>· 백만권, %)</u>	
	7 8	기정예산			· 호 거에 사 (O F)	기정예산	기정예산	
	구분		당초예산	간주처리	추경예산(안)	증.감액	대비 증감률	
		1)=2+3	2	3	4	(5)=(4)-(1)	\$/①	
illo	층 계 규 모	47,241,926	47,190,512	51,413	50,282,757	3,040,830	6.4	
	일 반 회 계	33,499,671	33,466,084	33,587	36,173,581	2,673,909	8.0	
	특 별 회 계	13,742,254	13,724,428	17,826	14,109,175	366,921	2.7	

¹⁾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O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2조 6,739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 ①'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3조 2,548억 5,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요청하고, ②세외수입 349억 4,70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③지방교부세의 경우에도 87억 5,800만원을 증액요청하고, ④ 국고보조금등은 1,490억 5,2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이나, ⑤지방세수입은 △7,696억원을 감액편성하고, ⑥내부거래는 예수금 수입을 △195억원 감액편성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3,669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요청한 것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가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표 2-2〉세입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	, .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이	베 산 -	<u> </u>	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50,282,757	100.0	47,241,926	100.0	3,040,830	6.4
지 방 세 수 입	24,112,184	48.0	24,881,784	52.7	△769,600	△3.1
세 외 수 입	4,278,194	8.5	4,220,887	8.9	57,307	1.4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965,886	5.9	3,043,887	6.4	△78,000	△2.6
임시적세외수입	725,404	1.4	593,109	1.3	132,294	2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86,902	1.2	583,890	1.2	3,012	0.5
지 방 교 부 세	196,615	0.4	187,856	0.4	8,758	4.7
보 조 금	8,645,436	17.2	8,467,262	17.9	178,173	2.1
국 고 보 조 금 등	8,645,436	17.2	8,467,262	17.9	178,173	2.1
시·도비보조금등	-	-	-	-	_	-
지 방 채	1,693,048	3.4	1,793,048	3.8	△100,000	△5.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57,278	22.6	7,691,087	16.3	3,666,191	47.7
보 전 수 입 등	4,239,616	8.4	458,453	1.0	3,781,163	824.8
내 부 거 래	7,117,661	14.2	7,232,633	15.3	△114,972	△1.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표, p.8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47조 2,419억 2,600만원)보다 6.4%, 3조 408억 3.0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2조 6,739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 1조 624억 8,700만원을 순증 편성하고, 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6,852억 8,7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2,027억 8,500만원 감액하고, 징수교부금 680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세 전출은 2,912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교육세 전출 의 경우에도 201억 1,600만원, 담배소비세 전출 224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법정경비를 정산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요청하고,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을 포함하여 33개 실·국·본부의 514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의 175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3,669억 2,100만원을 증·감 편성요청한 것임

〈표 2-3〉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 : 백만원, %)

												(- '	위 :	·	린, %)
분 야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u>ス</u> 0	감 률
	예	산	액	구	성 비	예	산	액	구	성 비					
총 계	50,	,282,7	757	1	0.001	47	,241,9	926		100.0	3,0	040,8	30		6.4
일반공공행정	9,	560,3	391		19.0	8	,128,	117		17.2	1,4	432,2	273		17.6
공공질서및안전	1,	445,5	599		2.8	1	,439, [°]	100		3.0		6,4	.99		0.4
교 육	4,	664,7	770		9.2	4	,328,8	377		9.1	-	335,8	892		7.7
문 화 및 관 광		942,5	565		1.8		906,0	092		1.9		36,4	73		4.0
환 경	2,	553,0	580		5.0	2	,329,0	518		4.9	2	224,0	062		9.6
사 회 복 지	17,	370,2	280		34.5	17	,078,2	214		36.1	2	292,0	065		1.7
보 건		637,	158		1.2		625,8	308		1.3		11,3	349		1.8
농림해양수산		107,7	726		0.2		108,4	414		0.2		△6	88	4	△0.6
산업·중소기업 및 에 너 지		660,	592		1.3		613,8	313		1.3		46,7	79		7.6
교통및물류	7,	437,3	370		14.7	6	,500,9	938		13.7	Ç	936,4	32		14.4
국토및지역개발	2,	597,7	735		5.1	2	,895,	593		6.1		297,8	857	\triangle	10.2
과 학 기 술		2,8	311		0.1		2,5	574		0.1		2	.37		9.2
예 비 비		146,9	925		0.2		135,0	082		0.2		11,8	342		8.7
기 타	2,	155,	148		4.2	2	,149,0	578		4.5		5,4	-69		0.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총괄표중 기능별, p.9~11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1) 지난회계연도 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는 지난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일 반회계 결산상 세계잉여금 3조 2,548억 5,7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증 편성요청 하였음
- 관련법령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의무경비를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에 편성요청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3조 2,548억 5,700만원)중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8,355억 3,1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4,413억 3,800만원), ③타 회계전출(530억 1,200만원)등 이른바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 ④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9,624억 8,700만원)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세계잉여금중 법정정산을 위해 세입예산에 **법정잉여금** 2조 2,923억 6,900만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세입처리 하고자 편성요청한 것이며

- 법정정산분을 차감한 가용재원은 9,624억 8,7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중 법정의무경비 정산후 잔액의 50%에 해당하는 9,624억 8,7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나, 금번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조례로 정한 비율(50%)보다 높은 55.2%, 1조624억 8,70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것으로 확인됨

〈표 3-1〉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	분	기정예산	증 · 감	추 경 (안)	주	<u>.</u>	요	-	증		감		내	역
00	여	금	0	3,254,857	3,254,857	서		계		잉	0=		금	3,25	54,857
	순 시 잉 C		0	962,487	962,487	순	<u>.</u>	세	계	0	(여	금	96	52,487
						받	I 정	의	무	경법	4	소	계	2,29	92,369
							조	정	교	부	금	교	부	685,	,287 ⁷⁻¹⁾
							재	정	보	전	금	교	부	66,	,014 ⁷⁻²⁾
							징	수	교	부	금	교	부	84,	,229 ^{₹3)}
							교	(<u>2</u>	청	?	4	출	441,	,338 ⁷⁻⁴⁾
	법 잉 c	정 여 금	0	2,292,369	2,292,369				_	특 별 시지			_	30,	,660 ⁷⁻⁵⁾
								•	_	특별 시지					8,760
								_	_	특 별 시지			_		4,380
								-		를 회 시설/			출 분)		9,211
							_			: 정호 정호			. —		,487 ²⁶⁾ (62,487)

-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주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 주2) '22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초과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반영
- 주3) '22년 시세입 초과징수분의 교부금을 '23년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추경 반영
- 주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①지방세 정산분(2,912억 9,000만원), ② 담배소 비세 정산분(224억 3,100만원), ③지방교육세 정산분(1,276억 1,600만원)
- 주5)「도시개발법」제60조에 따라 '2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예결산 차액의 70%인 306억 6,000만원
- 주6)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

2) 지방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24조 8,817억 8,400만원)보다 △ 7,696억원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보통세 △6,412억원(특별시분 재산세 △2,688억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3,724억원), 목적세 △1,284억원(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209억원, 지방교육세 △1,075억원) 대해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 재산세는 ①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는 특별시분 재산세(△2,688억원) 와 ②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3,724억원)를 감액 요청한 것으로.
 - 시세하락 등과 연동한 정부의 공시가격 인하와 전년도대비 재산세 세입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재산세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표 3-2〉국토교통부 2023년 전년대비 공시가격 변동률 공시

(단위 : %)

구분	전년대비 변동률(서울)	전년대비 변동률(전국)
표 준 지 공 시 지 가	△5.86	△5.92
표 준 주 택 가 격	△8.55	△5.95
공 동 주 택 공 시 가 격	△17.32	△18.63

※ 자료근거 : 국토교통부,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23. 1.20)

■ 최근 세입이 정부의 고금리 정책과 서울시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특별시분 재산세는 기정예산(1조 9,470억 3,400만원)보다 △2,688억원 감액조정 하였고,

- 특별회계 전출분이 연동되어 있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또한 기정예산(2 조 2,162억 4,500만원)보다 △3,724억원 감액 조정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70%),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10%, 재촉계정 10%), 교통사업비특별회계(10%)로 전출되는 예산도 조정한 것으로 검토됨
-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①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주택 등에 과세를 부과하는 소방분(△209)과 ②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1,075억원)를 감액 조정한 것으로,
 -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기정예산(3,340억 400만원)보다 △209억원 감액 조정하고, 재산세 수입에 대한 감소전 망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세** 또한 기정예산(1조 8,149억 4,800만원)보다 △1,075억원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편성요청 현황

					(271 - 722)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지		방 세	24,881,784	△769,600	24,112,184
	보	통 세	22,519,132	△641,200	21,877,932
		재 산 세 (특별시분)	1,947,034	△268,800	1,678,234
		재 산 세 (도시지역분)	2,216,245	△372,400	1,843,845
		도시개발특별회계	1,551,371	△230,019 ^{₹1)}	1,321,351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221,624	△32,859 ^{₹2)}	188,765
		주택사업특별회계 (재 촉 계 정)	221,624	△32,859 ^{₹3)}	188,765
		교통사업특별회계	221,624	△32,859 ^{₹4)}	188,765
	목	적 세	2,148,952	△128,400	2,020,552
		지 역 자 원 시 설 세 (소 방 분)	334,004	△20,900	313,104
		지 방 교 육 세 (재 산 세 분)	1,814,948	△107,500	1,707,44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1) '22년 도결산 306억 6,000만원 + '23년 감소분 △2,606억 8,000만원 = △2,300억 1,900만원

주2) '22년 결산 43억 8,000만원 + '23년 감소분 △372억 4,000만원 = △328억 5,900만원

주3) '22년 결산 43억 8,000만원 + '23년 감소분 △372억 4,000만원 = △328억 5,900만원

주4) '22년 결산 43억 8,000만원 + '23년 감소분 △372억 4,000만원 = △328억 5,900만원

3)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1조 2,999억 2,800만원)보다 349억 4,7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590억 8,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940억 1,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1,200만원)에 대해 증·감 조정 요청한 것임
 -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재산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정예산 (1,669억 5,500만원)보다 △75억 5,400만원 감액하고 사용료수입은 기정예산(1,515억 7,200만원)보다 41억 1,500만원 증액 하였으며 사업수입은 DMC F1,F2 용지매각, SH공사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기정예산(3,525억 4,600만원)보다 △556억 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자수입은 당초(115억 9,600만원)보다 100만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재산매각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기정예산(319억 800만원)보다 1,169억 9,100만원을 증액 조정 요청하고 보조금반환수입은 기정예산(2,244억 600만원)보다 △109억 2,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기정예산(1,473억 7,400만원)보다 △ 120억 4,500만원 감액요청한 것임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경우, 시유재산 무단점유로 발생된 변상금 1,200만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4)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의 대상을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1,876억 5,600만원) 보다 4.6%, 87억 5,800만원 증액한 1,964억 1,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전액 소방안전교부세 87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교부세 편성요청 현황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지 방 교 부 세	187,656	8,758	196,415
보통교부세	155,407	0	155,407
특 별 교 부 세	3,025	0	3,025
소 방 안 전 교 부 세	29,224	8,758	37,983

-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본예산에 29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3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45억 900만원 증액된 337억 3,300만원으로 통보하였고
 -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22년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소방안전교부 세 정산분(42억 4,900만원)을 추가 교부하는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금 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당초(292억 2,400만원)보다 87억 5,800만원 증액된 379억 8,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3-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내역 통지 현황

7	'	'22년도 정 예 산 서·도별 교부액 ('22.12.30)			'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	<u>ス</u> ·	감	
	A			1	2	B=1+2	©=®	- (A)
	29,224		224	33,733	4,249	37,983		8,758

5)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511)의 경우, 기정예산(6조 3,605억 4,200만원)보다 2.3%, 1,490억 5,200만원 증액된 6조 5,095억 9.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국고보조금**(511-01)은 기정예산(6조 277억 8,100만원)보다 924억 100만원 증액된 6조 1.201억 8.3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중앙정부의 내시 등에 따라 **전기차 보급**(1,045억 6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55억 8,0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 동지원사업**(40억 7,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급**(14억 4,500만원) 등 53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요청하고,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112억 3,200만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146억 4,800만원) 등 36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은 기정예산(1,130억 6,700만원) 보다 162억 8,800만원 증액된 1,293억 5,5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37억 900만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 심서비스 운영지원(6억 7,000만원)등 9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요청 하고,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9억 3,600만원),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지원(△3억원)등 4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금**(511-03)은 75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고자 기정예산(2,196억 9,300만원)보다 18.3%, 403억 6,200만원이 증액된 2,600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6A〉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등	6,360,542	149,052	6,509,595		
국 고 보 조 금	6,027,781	92,401	6,120,183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자립지원 사업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 학대피해아동심터 설치(보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비료가격 안정 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환계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환계농 영농정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행산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행산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우-행기관 운영 ○호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라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라인의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 장애인 부자시설 기능보강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 장애인 불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 전기차 보급 ○ 수소충전소 보급 ○ 우소하 보급 ○ 수소하건도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 가정용친환경 보일러 보급	△11,232 545 1,445 419 186 △3,676 △24 15 252 △110 300 △2 △10 105 4 700 △3,377 △49 8 8 0,016 261 4,073 △190 643 640 26 5,580 79 104,506 2,425 4,200 13,379 △577 900

〈표 3-6B〉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 백만원)
국 고 보 조 금	6,027,781	92,401	6,120,183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 전통안사 문화재 활용 ○ 정동야행 ○ 한양도성 보수·정비 ○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운영 ○ 한양도성 인왕·목성 성곽 보수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상대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국비) ○ 가거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점진 지원 ○ 의료수급권자 열반건강점진 지원 ○ 의료수급권자 연유아 건강검진 지원 ○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비 지원 ○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비 지원 ○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비 지원 ○ 청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최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청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 청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 경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 성감염병 격리치료비 ○ 외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 인력운영비-보건소 결핵관리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무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15 478 460 21 91 △110 48 35 762 120 △269 1,187 80 76 △1,057 △96 △25 △118 △4,057 50 407 △14,648 △502 △79 △3,855 △3,272 480 △0,6 △428 △20 △519 △2,949 △17 △3,070 15 △3

〈표 3-6C〉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 백만원)
국 고 보 조 금	6,027,781	92,401	6,120,183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 가꾸기 야생동물 피해예방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강화(보조) 길고양이 중성화(TNR)(국비) 	3 △3 170 31 15 △41 △250 △35 △75 175 90 52
국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 조 금	113,067	16,288	129,355	○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보조) ○ 거점형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 거점형 키움센터 기자재비 지원 ○ 걱정형 키움센터 기자재비 지원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3 13,774 1 10 40 27 3,709 133 93 △936 △914 670 △300 △20
기금	219,693	40,362	260,056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보조) ○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119 5 0.9 48 6 △12 0.3 22 4 15 20 30

〈표 3-6D〉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기 금	219,693	40,362	260,056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국고보조금 감액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청소년양전망 구축 지원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급식지원 ○ 청소년이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 ○ 청소년험터회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국비)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국비)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국비) ○ 공급의료기관 지원 ○ 재난용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국비) ○ 재난어점병원 운영 지원(국비) ○ 대사거점병원 운영 지원(국비)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시외혈관 질환 예방관리 ○ 시외역관 질환 예방관리 ○ 시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 생재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 보험임신부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 교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비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회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3 750 △128 △670 1,890 △259 95 42 46 46 40 △2 △140 251 12 80 34 △121 △3 971 2 5 16 269 △18 69 △18 69 △18 69 △10 2 10 2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표 3-6E〉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기금	219,693	40,362	260,056	○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 유족 지원사업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증진사설 인력확충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 자역 치매산심센터 운영 ○ 장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실시 ○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 ○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초동대응요원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 외로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 성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 성명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 경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 결핵 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 결핵 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 인력운영비-보건소 결핵관리 ○ 건축안 관리 ○ 연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 ○ 생활밀착형 숲 조성 ○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	2 7 △6 116 △309 14,648 1,900 502 79 △5 5 △0.7 428 △4 519 2,949 20 1 3,855 △25 3,272 △110 17 3,070 175 250 35

6)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내부거래**중 예수금 수입은 기정예산(7,119억 5,600만원)보다
 2.7%, △195억원을 감액한 6,924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재산세 감소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95억원을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7〉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수요 증감 내역
세 외 수 입	1,299,982	34,947	1,334,876	
경 상 적 세 외 수 입	844,015	△59,082	784,933	∘재산임대수입 △7,554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등 △7,526 ∘매각사업수입 △107,100 ·DMC F1,F2 용지 매각수입 △107,100 ∘사용료수입 4,115 ·입장료,주차요금 등 수입 4,115 ∘배당금수입 50,000 ·SH공사 이익배당금 50,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57,981 ·일반회계 여유자금 이자수입 57,981
임시적세외수입	448,277	94,017	542,294	∘재산매각수입 116,991 ·공유재산 매각수입 116,991 ∘보조금반환수입 △10,928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0,98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635	12	7,648	• 변상금 12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2
지 방 교 부 세	187,656	8,758	196,415	
소방안전교부세	29,224	8,758	37,983	·소방안전교부세 8,758
보 조 금	6,360,542	149,052	6,509,595	
국 고 보 조 금 등	6,360,542	149,052	6,509,595	·국고보조금92,401·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6,288·기금40,36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9,759	3,250,750	4,020,509	
보전수입등	57,802	3,270,250	3,328,053	• 순세계잉여금962,487• 법정잉여금2,292,369
내부거래	711,956	△19,500	692,45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9,5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구성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 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13조 7,422억 5,400만원)보다 2.7%, 3,669억 2,100만원 증액된 14조 1,091억 7,5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8A)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특 별 회 계	13,742,254	366,921	14,109,175	
공기업특별회계	1,816,400	27,349	1,843,749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30,000	-	930,000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86,400	27,349	913,749	∘일반회계지원금△164∘순세계잉여금27,514
기타특별회계	11,925,854	339,571	12,265,426	
도 시 철 도 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2,011,991	△8,928	2,003,062	∘모집공채△39,000∘매출공채△61,000∘순세계잉여금23,613∘기타회계전입금67,456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670,325	494,965	2,165,290	∘공유재산임대료△4,536∘부담금3,000∘국고보조금7,110∘보전수입등126,100∘순세계잉여금124,254∘전년도이월금1,846∘기타회계전입금339,950∘예수금수입23,340

〈표 3-8B〉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305,964	12,810	318,775	○기타수입 ○국고보조금등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12,000 9,584 △9,313 532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2,981,248	2,764	2,984,013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수입 ○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예수금수입	△15,548 20,000 2,459 286,562 37,280 △328,60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832,191	△187,153	1,645,038	○공유재산매각수입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	△5,786 9,840 24,087 3,151 △230,019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169,685	93	169,778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기타회계전입금	11,174 332 △11,413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29,386	7,385	36,771	◦순세계잉여금	7,385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1,912,895	15,944	1,928,839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1,166 490 51 14,183 51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35,791	820	36,612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전입금	△508 828 500
소 방 특 별 회 계	976,373	868	977,242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기타회계전입금	75 △6,193 1,373 5,613

1) 잉여금에 대한 세입경정

-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인 바,
 - 특별회계중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결산상 잉여금 275억 1,4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편 성요청한 것임
 - 아울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236억 1,3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111억 7,4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73억 8,500만원)의 경우에도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이번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편성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경우, '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회계가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을 경정 요청한 것으로
 - 교통사업특별회계(1,242억 5,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2,865억 6,2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240억 8,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141억 8,300만원)는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요청한 것이나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93억 1,3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5억 800만원), 소방특별회계(△61억 9,3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 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감액조정 요청한 바,

〈표 3-9〉 순세계잉여금 경정 현황(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 2 3 년 도 본 예 산 기 반 영 액	' 2 2 회 계 연 도 결 산 결 과 순 세 계 잉 여 금 ②	추 경 안 감 가 액 3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78,349	202,604	124,254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313	△6,631	△9,313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57,636	431,536	286,562		
 도시개발특별회계	74,788	98,876 24,0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34	18,318	14,183		
l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70	362	△508		
소 방 특 별 회 계	25,281	19,088	△6,193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22,365	49,246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 「'22회계연도 결산서」 및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23년도 본예산에 세계잉여금을 미리편성하여 '22회계연도 결산결과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억 800만원, 소방특별회계는 △61억 9,300만 원을 감액조정 하여야 하나,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추경예산안을 통해 △93억 1,3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이나, '22회계연도 결산결과 △66억 3,1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되어 사실상 마이너스(-)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 '23회계연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66억 3,100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편성된 93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159억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며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 였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 실상의 가용재원인바,
 - 서울시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서울시는 시행령이 아닌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해당 회계연도 결산 이후 특별회계에서 발생될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전년도 11월, 다음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될 경우,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재정 여력에 한계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중 지적하고 있음에도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8개 특별회계에서 '23년도 세입예산안에 관성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

-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중앙정부가 당초 내시 액을 증·감 변경통보 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5개 특별회계가 세입예산 을 증·감액편성을 요청한 바.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 대한 국비 74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미래형ITS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이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기정예산(366억 6,500만원)보다 2개 사업에 대해 71억 1,0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78억 8,400만원,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에 대한 국비 5,000만원이 통보되어 2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79억 3,400만원을 신규편성요 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가공배전선 지중화에 국비 95억 1,000만 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3억 3,000만원 통보되어 기정예산(926억 1,800만원)보다 2개 사업에 대해 98억 4,000만원 증액편성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에 국비 5,100만원이 추가교부되어 세입예산을 경정 요청한 것이고,
 - 소방특별회계는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국비 7,500만원이 추가교부되어 대해 세입예산을 경정 요청한 것임

〈표 3-10〉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교 특	통 멸	사 회	업 계	36,665	7,110	43,776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미래형 ITS 국고보조금	7,440 △330
광 특	역 교 별	통 시 회	설 계	-	7,934	7,934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7,884 50
도특	시 별	개 회	발 계	92,618	9,840	102,459	∘가공배전선 지중화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9,510 330
의 특	료 급 별	여 기 회	금 계	952,626	51	952,678	∘의료급여사업	51
소 특	별	회	방 계	1,886	75	1,961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75

- 세입항목인 국고보조금등에 포함되는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 금의 경우.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중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 국비 16억 5,000 만원이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106억 6,2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16억 5,0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1〉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 가 균 형 발 전 특별회계보조금		1,650	12,312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1,69	50

○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기금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중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등 △179억 1,800만원이 감액통보 되고, 역세권 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10억 6,400만원,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193억 1,200만원은 증액 통보 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24억 5,900만원을 증·감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2〉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주 택 사 특 별 회	업 계	기 금	769,432	2,459	771,891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17,918 ○역세권 청년주택 1,060 SH공사 선매입 ○재건축 및 공공임대 19,312 주택 매입 ○

3)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경정

-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가 세외수입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바.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기정예산(4,733억 9,300만원) 보다 △15억 3,6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공 유재산임대료(△45억 3,600만원)를 감액조정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중 부담금(30억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기정예산(732억 400만원) 보다 120억원 증액요청한 것으로 임시적세외수입중 그외수입(120억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기정예산(5,322억 2,000만원) 보다 44억 5,200만원 증액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 료(△155억 4,800만원)를 감액 조정 요청하고 **임시적세외수입**중 그 외 수입(200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기정예산(427억 7,300만원)보다 57억 8,600만원 증액요청한 것으로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57억 8,6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기정예산(35억 700만원)보다 16억 5,7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11억 6,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그외수입(4억 9,000만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3-13〉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교특	통 별	사 회	업 계	473,393	△1,536	471,856	○주차장 부대시설 등 사용료 (주차장관리계정)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조성 부담금(분담금계정)	△4,536 3,000
광 특	역 교 별	통 시 회	설 계	73,204	12,000	85,204	◦그외수입	12,000
주특	택 별	사 회	업 계	532,220	4,452	536,673	∘임대보증금 인상 납부유예 예상 결손액 등 ∘임대보증금 인상 납부유예 예상 결손액 등 ∘역세권청년주택 퇴거세대 반환금	△329 △15,218 20,000
도 특	시 별	개 회	발 계	42,773	5,786	48,560	∘마장청계플랫폼525 도시재생기반시설 매각수입	5,786
의 특	료 급 별	여 기 회	금 계	1,912,895	15,944	1,928,839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외수입	1,166 490

4) 지방채에 대한 세입경정

- 지방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금번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가 지방채 세입예 산을 증·감 조정 요청한 바.
 - 지방채 세입예산을 기정예산(1조 2,772억 5,200만원)보다 △1,000억원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모집공채(△390억원)와 매출공채(△610억원)를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3-14〉 지방채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도 시 철 도 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지 방 채	1,277,252	△100,000	1,177,252	○모집공채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동북선 경전철 건설 -9호선 4단계 건설 -지방채 상환 ○매출공채 -도시철도 매출공채 실판매액	△39,000 51,000 △68,000 △53,000 △12,000 43,000 △61,000

○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 기편성된 지방채 세입예산액을 증·감편성요청 함에 따라 예산총칙중 공채발행 및 차입금 현황을 명시하고 있는 제4조도 연동하여 경정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5〉 예산총칙 제4조 경정 현황

'23년도 예산	서(당초)	\rightarrow	'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변경)
(1) 도시철도건사업비특별회계	1,277,252,240천원		(1) <u>도시철도건사업비특별회계</u>	1,177,252,240천원
(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5,000,000천원		(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5,000,000천원
(3) 주택사업특별회계	395,000,000천원		(3) 주택사업특별회계	395,000,000천원
(4) 도시개발특별회계	35,796,000천원		(4) 도시개발특별회계	35,796,000천원

5)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세입경정

○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내부거래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 한 7개 특별회계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6조 4,195억 5,800만원)보다 △953억 300만원 증·감하여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규모 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

〈표 3-16A〉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다위 : 밴마워)

_				\	<u> 단위 : 맥만원)</u>			
	구성	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	역
	겨			6,419,558	△95,309	6,324,249		△113,037
	도시철도? 특 별	건설시업 ⁺ 회 계	l 내부거래	537,060	67,456	604,517	∘일반회계 전입금	67,456
	교 통 특 별	사 C 회 겨	ీ 내부거래	1,076,461	363,290	1,439,751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교통관리계정) ○22년 결산 재산세 도시지역분 ○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소분	372,810 4,380 △37,240
	광 역 교 특 별	통 시 설 회 겨	i 내부거래	127,784	532	128,317	∘일반회계 전입금	532

〈표 3-16B〉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ZT ET	택 별	사 회	업 계	내부거래	1,096,676	△291,319	805,356	○일반회계 전입금 (국민계정) ○22년 결산 재산세 도시지역분 ○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소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3,000 8,760 △74,480 △328,600
	시 별	개 회	발 계	내부거래	1,552,620	△230,019	1,322,600	∘22년 결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입금 ∘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소분	30,660 △260,680
균 특	형 별	발 회	전 계	내부거래	132,758	△11,413	121,344	∘일반회계 전입금	△11,413
	로급 별	여 기 회	금 계	내부거래	952,626	51	952,678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51
한 7 특	강 수 별	질 개 회	선 계	내부거래	1,258	500	1,758	。'20~'22년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지출잔액	500
소 특	별	회	방계	내부거래	942,315	5,613	947,928	○기타회계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소방정책사업비계정) ·지역자원시설세(인건비계정) ·소방안전교부세(소방정책사업비계정)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계정) ·일반회계전입금(인건비계정)	5,613 △8,181 △3,506 5,587 1,308 10,406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추경예산안의 특징

-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규칙중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별도 규정을 지난 '99년도 3월, 동 시행규칙제정 당시부터 적용한 것으로 사료됨
 -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비나 시비 조정이 필요한 세부사업과 국고보조 금 반환 등을 위해 증액요청한 사업, 세출재원조정 등을 위해 증·감 조정 요청한 세부사업 등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되는 사례로 사료됨
- 서울시가 지난 5월 30일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해 689개 사업을 증·감 조정 요청한 것으로
 - ①사업별설명서 작성이 생략되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내부거래와 재무활동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105개 세부사업 외에도 ②신규사업 87개, ③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나 시비 조정이 필요한 148개, ④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한 사업 261개 세부사업과 ⑤세출재원조정 등을 위해 시비를 감액요청한 88개 세부사업 등으로 검토됨
- 아울러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에 대해 세입예산을 경정하고,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자 금번 '23년도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는 최근 3년간('22회계연도~'20회계연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요 등에 대응하고자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중 일부를 세입예산에 이입하여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23년도에는 '22회계연도

결산 이후 결산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을 통해 반 영하려는 것임

〈표 4-1A〉신규사업 현황 (2억원 이상 증액사업)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도 시 교 통 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20,180	20,180
안 전 총 괄 실	방음판 교체 및 방재시설 강화	_	19,156	19,156
여성가족정책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	10,240	10,240
안 전 총 괄 실	강 남 순 환 도 시 고 속 도 로 건 설	_	4,724	4,724
시 민 건 강 국	응급의료기관 지원(자체)	_	3,950	3,950
여성가족정책실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_	3,135	3,135
도 시 교 통 실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_	3,000	3,000
디 자 인 정 책 관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	2,719	2,719
재 무 국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_	2,643	2,643
관 광 체 육 국	(가 칭) 송 현 동 및 축 제	_	1,792	1,792
기 후 환 경 본 부	고 효 율 간 편 시 공 추 진	_	1,500	1,500
안 전 총 괄 실	겸 재 교 방 음 판 교 체 공 사	_	1,477	1,477
여성가족정책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_	1,435	1,435
물 순 환 안 전 국	마 곡 지 구 하 수 재 처 리 수 공급관로 공사 사업비 정산	_	1,361	1,361
도 시 교 통 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우수회사 인센티브 지원	-	1,340	1,340
푸른도시여가국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_	1,297	1,297
관 광 체 육 국	잠실 제1수영장 노후 시설물 개선	-	1,105	1,105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_	1,024	1,024
경 제 정 책 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_	1,000	1,000
안 전 총 괄 실	잠 수 교 전 면 보 행 화	_	1,000	1,000

〈표 4-1B〉 신규사업 현황 (2억원 이상 증액사업)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위 : 맥만원) 추경안
주 택 정 책 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	976	976
관 광 체 육 국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에 따른 시 설 물 이 전 설 치	_	917	917
시 민 건 강 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자체)	-	818	818
문 화 본 부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_	787	787
경 제 정 책 실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	-	720	720
문 화 본 부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운영	_	659	659
문 화 본 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	656	656
안 전 총 괄 실	서부간선지하도로 방음터널 교체 공사	_	647	647
경 제 정 책 실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_	600	600
물 순 환 안 전 국	목동중앙서로 하수관로 개량	-	600	600
여성가족정책실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_	584	584
한 강 사 업 본 부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_	550	550
한 강 사 업 본 부	책읽는 한강공원 조성 및 운영	_	520	520
주 택 정 책 실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_	500	500
물 순 환 안 전 국	광나루로 2 4 2 - 1 2 외 3 개 소 주 변 하 수 관 로 개 량	_	500	500
물 순 환 안 전 국	천호대로157길 14 주변 하수관로 개량	-	500	500
도 시 계 획 국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	400	400
한 강 사 업 본 부	한 강 리 버 버 스 도 입	-	400	400
한 강 사 업 본 부	여의도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	400	400
도 시 교 통 실	온 열 의 자 설 치	_	388	388

〈표 4-1C〉신규사업 현황 (2억원 이상 증액사업)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푸른도시여가국	서오릉 근린공원(2지구) 조성	-	321	321
평 생 교 육 국	중장년 직업교육 경비지원	-	303	303
문 화 본 부	공예 협력 전시·프로젝트	-	300	300
물 순 환 안 전 국	중 랑 구 저지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빗물받이 확대 설치	_	300	300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약 자 동 행 기술 박 람 회 개 최	_	290	290
문 화 본 부	광화문광장 새해맟이 페스티벌	_	290	290
관 광 체 육 국	여의나루역 러너축제 운영	_	280	280
경 제 정 책 실	친 선 우 호 도 시	-	270	270
물 순 환 안 전 국	휘경동 302-2 일대 하수관로 이설	_	270	270
기 후 환 경 본 부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	-	256	256
노 동공 정상생정책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국 가 직 접 사 업)	_	252	252
한 강 사 업 본 부	여의도 선착장 기반시설 확충	_	252	252
서울역사박물관	어 린 이 박 물 관 조 성	_	223	223
균형발전본부	도심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_	220	220
문 화 본 부	아 트 서 울 활 성 화 사 업	_	200	200
디 자 인 정 책 관	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200	200
안 전 총 괄 실	소공로 및 남대문로 7길 일대 보 행 환 경 개 선	-	200	200
도 시 계 획 국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200	200
푸른도시여가국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계획 용역	-	200	200
한 강 사 업 본 부	수상 부유식 수영장 및 보행데크 설치	_	200	200

〈표 4-2A〉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한 사업 현황(5억원 이상)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난 증액	위 : 맥만원) 추경안
기 후 환 경 본 부	전 기 차 보 급	(x80,958) 113,889	(x104,406) 137,702	(x185,464) 251,591
구 택 정 책 실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x32,766) 97,244	(x19,312) 56,229	(x52,079) 153,473
기 후 환 경 본 부	운 행 경 유 차 저 공 해 사 업 - 운 행 경 유 차 배 출 가 스 저 감	(x7,910) 15,523	(x13,379) 26,758	(x21,289) 42,410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x5,562) 102,003	(x7,884) 19,264	(x13,446) 121,267
안 전 총 괄 실	가 공 배 전 선 지 중 화	(x-) 5 , 932	(x9,510) 17,586	(x9,510) 23,518
복 지 정 책 실	의 료 급 여 사 업	(x952,626) 1,912,783	(x51) 15,944	(x952,678) 1,928,727
도 시 교 통 실	광 역 알 뜰 교 통 카 드 마 일 리 지 지 원 사 업	(x4,228) 8,457	(x7,440) 14,881	(x11,669) 23,338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x281,746) 523,101	(x1,445) 12,389	(x283,191) 535,49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x80,074) 173,662	(x4,073) 8,825	(x84,147) 182,487
복 지 정 책 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x27,487) 40,315	(x5,580) 8,185	(x33,068) 48,500
기 후 환 경 본 부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x-) 3,909	(x4,200) 6,000	(x4,200) 9,909
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활 동 지 원 사 업 - 활 동 지 원 급 여	(x271,359) 547,629	(x640) 3,222	(x272,000) 550,851
기 후 환 경 본 부	수 소 연 료 전 지 시 범 사 업	(x-) -	(x1,890) 2,954	(x1,890) 2,954
시 민 건 강 국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x14,648) 21,973	(x1,900) 2,850	(x16,548) 24,82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x11,232) 17,290	(x2,541) 2,715	(x13,774) 20,006
시 민 건 강 국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x-) -	(x1,187) 1,781	(x1,187) 1,781
도 시 교 통 실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x-) 3,500	(x1,650) 1,650	(x1,650) 5,150
여성가족정책실	요 보 호 아 동 그 룹 홈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x2,901) 11,890	(x419) 1,521	(x3,320) 13,411
기 후 환 경 본 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x5,400) 9,000	(x900) 1,500	(x6,300) 10,500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x19,420) 115,291	(x545) 1,435	(x19,965) 116,726

〈표 4-2B〉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한 사업 현황(5억원 이상)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복 지 정 책 실	청 소 년 발 달 장 애 인 방 과 후 활 동 서 비 스 지 원	(x4,557) 9,114	(x643) 1,286	(x5,200) 10,400
주 택 정 책 실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x871) 4,964	(x1,064) 1,123	(x1,935) 6,087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x-) 380	(x700) 1,100	(x700) 1,40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 인왕곡성 성곽보수	(x-) -	(x762) 1,089	(x762) 1,089
시 민 건 강 국	응 급 의 료 기 관 지 원	(x4,347) 5,054	(x971) 1,082	(x5,318) 6,136
문 화 본 부	풍 납 토 성 복 원 (토 지 보 상)	(x53,974) 77,105	(x664) 949	(x54,638) 78,055
복 지 정 책 실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x171) 343	(x750) 937	(x921) 1,281
시 민 건 강 국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x3,893) 8,164	(x407) 837	(x4,300) 9,001
문 화 본 부	국 가 지 정 문 화 재 보 수 정 비	(x26,742) 38,552	(x478) 825	(x27,220) 39,377
문 화 본 부	문 화 재 야 행 프 로 그 램	(x320) 560	(x460) 805	(x780) 1,365
복 지 정 책 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x763) 2 , 291	(x261) 783	(x1,025) 3,075
기 후 환 경 본 부	은 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개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x-) 3 , 866	(x330) 716	(x330) 4,583
여성가족정책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x300) 600	(x300) 600	(x600) 1,200
평 생 교 육 국	청 소 년 복 지 시 설 운 영 지 원	(x3,268) 9,620	(x251) 521	(x3,519) 10,141

〈표 4-3〉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한 사업 현황(1억원 이상)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주 택 정 책 실	역 세 권 청 년 주 택 매 입	(x98,530) 116,804	(x△17,918) △17,918	(x80,612) 98,886
안 전 총 괄 실	태 릉 ~ 구 리 I C 간 도로 확 장	(x3,200) 10,225	(x50) △3,150	(x3,250) 7,075
복 지 정 책 실	노 인 맞 춤 돌 봄 서 비 스	(x34,547) 51,940	(x△914) △1,372	(x33,632) 50,568
도 시 교 통 실	자율주행기반 미래형 ITS 구축	(x1,050) 3,500	(x△330) △1,100	(x720) 2,400
기 후 환 경 본 부	소 규 모 대 기 배 출 사 업 장 방 지 시 설 설 치	(x1,801) 3,243	(x△577) △1,039	(x1,224) 2,203
복 지 정 책 실	어 르 신 일 자 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x1,547) 5,162	(x△190) △633	(x1,357) 4,528
문 화 본 부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지원	(x1,500) 1,950	(x△300) △390	(x1,200) 1,560
관 광 체 육 국	장 애 인 생 활 체 육 지 도 자 배 치 및 활 동 지 원	(x2,014) 3,646	(x△259) △389	(x1,755) 3,257
시 민 건 강 국	통 합 정 신 건 강 증 진 사 업	(x2,660) 4,071	(x△309) △342	(x2,351) 3,728
문 화 본 부	정 동 야 행	(x110) 278	(x△110) △278	(x-) -
여성가족정책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x3,283) 8,386	(x△110) △220	(x3,133) 8,165
시 민 건 강 국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x3,283) 7,113	(x△76) △164	(x3,207) 6,948
평 생 교 육 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용 공간 지원)	(x140) 140	(x△140) △140	(x-) -
복 지 정 책 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집 수 리) 사 업	(x1,451) 1,451	(x△128) △128	(x1,323) 1,323
시 민 건 강 국	권 역 외 상 센 터 운 영 지 원	(x1,972) 1,972	(x△121) △121	(x1,850) 1,850
시 민 건 강 국	결 핵 관 리 - 의 료 기 관 결 핵 환 자 관 리 지 원	(x3,272) 3,272	(x110) 110	(x3,161) 3,161

〈표 4-4A〉기정예산 보다 증액 편성한 사업 현황(20억원 이상)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위 : 맥만원) 추경안
도 시 교 통 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451,664	449,800	901,464
평 생 교 육 국	지 방 세 전 출	1,761,108	291,290	2,052,398
주 택 정 책 실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84,229	67,993	152,222
도 시 교 통 실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	115,843	51,060	166,903
여성가족정책실	서 울 형 키 즈 카 페 조 성	21,424	31,750	53,175
평 생 교 육 국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61,992	22,431	284,423
평 생 교 육 국	지 방 교 육 세 전 출	1,926,002	20,116	1,946,118
경 제 정 책 실	서 울 동 행 일 자 리	86,200	20,000	106,200
도 시 교 통 실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49,958	19,134	69,092
도 시 교 통 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31,600	17,600	49,200
도 시 교 통 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8,024	15,182	23,206
기 획 조 정 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47,665	14,684	62,349
도 시 교 통 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89,983	12,557	102,540
물 순 환 안 전 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79,681	10,827	190,508
시 민 건 강 국	난 임 부 부 지 원 (전 환 사 업)	11,610	10,547	22,158
물 순 환 안 전 국	중 랑 물 재 생 센 터 운 영	49,998	8,576	58,574
홍 보 기 획 관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23,217	7,329	30,547
관 광 체 육 국	서 울 관 광 재 단 출 연 금	58,126	6,912	65,038
문 화 본 부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734	5,802	6,536
구 택 정 책 실	공 공 정 비 계 획 수 립	7,504	5,704	13,208

〈표 4-4B〉 기정예산 보다 증액 편성한 사업 현황(20억원 이상)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단· 증액	위 : 맥만원) 추경안
경 제 정 책 실	제 조 산 업 작 업 환 경 개 선	4,807	5,050	9,857
경 제 정 책 실	서 울 경 제 진 흥 원 출 연	56,475	4,440	60,916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운 영	27,700	4,270	31,970
행 정 국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2,838	3,742	36,581
경 제 정 책 실	D D P 쇼 룸 운 영	365	3,600	3,965
도 시 교 통 실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9,950	3,500	43,450
복 지 정 책 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4,519	3,212	17,732
물 순 환 안 전 국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8,810	2,650	11,460
주 택 정 책 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5,264	2,600	7,864
디 자 인 정 책 관	서 울 디 자 인 재 단 출 연 금	29,618	2,577	32,196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4,229	2,563	6,792
도 시 교 통 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82,221	2,513	84,735
관 광 체 육 국	서 울 관 광 거 버 넌 스 운 영	1,893	2,505	4,398
안 전 총 괄 실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5,020	2,500	7,520
평 생 교 육 국	도 농 상 생 공 급 급 식 지 원	2,156	2,253	4,410
안 전 총 괄 실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9,192	2,147	11,339
물 순 환 안 전 국	풍 수 해 보 험 료 지 원	374	2,138	2,512
경 제 정 책 실	서 울 형 R & D 지 원	38,227	2,080	40,307
주 택 정 책 실	희 망 의 집 수 리 사 업	1,110	2,000	3,110
균형발전본부	경 복 궁 광 화 문 월 대 등 문 화 재 복 원 및 주 변 정 리	6,000	2,000	8,000

〈표 4-5A〉기정예산 보다 감액 편성한 사업 현황(△10억원 이상)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위 : 맥만원) 추경안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175,069	△68,632	106,436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76,982	△53,027	123,955
주 택 정 책 실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46,629	△36,000	110,629
시 민 건 강 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17,857	△14,142	3,71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63,273	△12,620	50,653
안 전 총 괄 실	서 부 간 선 도 로 일 반 도 로 화 및 친 환 경 공 간 조 성	15,100	△9,000	6,100
안 전 총 괄 실	영 등 포 로 터 리 구 조 개 선 (교 통 개 선 분 담 금)	7,889	△7,889	_
도 시 교 통 실	도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방화대로)	7,207	△7,207	_
도 시 교 통 실	신 논 현 역 등 5 개 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7,000	△7,000	_
안 전 총 괄 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5,774	△5,774	_
노 동공 정상생정책관	양 곡 도 매 시 장 이 전	9,020	△5,400	3,620
안 전 총 괄 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15,800	△5,062	10,738
여성가족정책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41,854	△4,654	37,200
한 강 사 업 본 부	선 유 도 보 행 잔 교 및 수 상 갤 러 리 조 성	4,275	△4,275	_
관 광 체 육 국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12,322	△4,000	8,322
기 후 환 경 본 부	전 기 차 충 전 인 프 라 구 축	23,249	△3,452	19,797
경 제 정 책 실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9,348	△3,300	6,048
시 민 건 강 국	보 라 매 병 원 만 심 호 흡 기 전 문 센 터 건 립	7,500	△3,245	4,255
안 전 총 괄 실	탄 천 변 동 측 도 로 확 장 (교 통 개 선 분 담 금 계 정)	5,114	△3,000	2,114
한 강 사 업 본 부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2,810	△2,810	_

〈표 4-5B〉 기정예산 보다 감액 편성한 사업 현황(△10억원 이상)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기 후 환 경 본 부	자 원 회 수 시 설 환 경 개 선	3,634	△2,600	1,034
균 형 발 전 본 부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사업	3,678	△2,490	1,188
시 민 건 강 국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4,801	△2,333	2,468
안 전 총 괄 실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6,000	△2,000	4,000
안 전 총 괄 실	성 동 교 확 장	5,600	△2,000	3,600
안 전 총 괄 실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6,304	△2,000	4,304
주 택 정 책 실	안 심 집 수 리 보 조 사 업	12,650	△2,000	10,650
물 순 환 안 전 국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11,710	△2,000	9,710
물 순 환 안 전 국	구로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318	△2,000	3,318
물 순 환 안 전 국	시흥고지-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971	△2,000	2,971
물 순 환 안 전 국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982	△2,000	2,982
물 순 환 안 전 국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826	△1,961	2,864
물 순 환 안 전 국	서남물재생센터 상용전력설비 구축사업	3,500	△1,610	1,890
경 제 정 책 실	(가칭)서울큐브 조성	11,607	△1,500	10,107
물 순 환 안 전 국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2,300	△1,500	800
여성가족정책실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1,523	△1,223	300
경 제 정 책 실	스 마 트 앵 커 운 영	7,676	△1,189	6,487
안 전 총 괄 실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520	△1,000	1,520
물 순 환 안 전 국	오 류 천 (구 로 구) 단 면 확 장	5,784	△1,000	4,784
물 순 환 안 전 국	센터 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8,460	△1,000	7,460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서울시가 제출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23년도 본 예산 심사시 의결('22.12)된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제1조)과 공 채발행 및 차입금(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제7조)를 수정한 것으로.
 -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 편성요청함에 따라 예산총 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를 조정하고 사업의 증·감 조정 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를 연동하여 경정하려는 것임
- 예산총칙중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의 경우에는 당초 47조 1,905억 1,200만원을 50조 2,827억 5,7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임
 - 기정예산(47조 2,419억 2,600만원)보다 3조 408억 3,000만원 증액된 50조 2,827억 5,7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총액도 동일하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총칙중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의 경우, 1개 특별회계에 대해 발행 액을 경정요청하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기정 한도액(1조 2,772억 5,200만원)보다 △1,000억원을 감액한 1조 1,772억 5,200만원으로 경정요청한 것임

〈표 4-6〉예산총칙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 경정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본	예	산	증	감	액	제 1 회 추 경 안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	특별회계		1,277	,252		△100	,000	1,177,252
광 역 교	·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85,000		-		-	85,000
주 택 서	사 업 특 별	회 계	395,000		-		-	395,000	
도 시 7	ㅐ 발 특 별	회 계		35	,796			-	35,796

○ 서울특별시는 예산총칙 제4조와 연동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 입예산중 **지방채**에 대해서도 6개 세부사업을 경정요청하였음

〈표 4-7〉 '23년도 제1회 추경안 특별회계 세입중 지방채 편성요청 현황

예산과목	세	부	내	역	본 이	ᅨ 산	증 감		추경(안)
도 시 철	보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1,22	7,252	△100,	000	1,127,252
모집공채	모집 공 채(서울교통공사	ŀ 노후자 동 차	교체(6차))		-	51,	000	51,000
"	모집공채((진접선(4호	선연장) 차량	기지 건설)	15	0,000	△68,	000	82,000
"	모집공차	서(동북선	경전철 건석	설(민자))	10	0,000	△53,	000	47,000
"	모 집 공	채 (9 호	선 4단계	건 설)	4	0,000	△12,	000	28,000
"	지 방	채 성	· 환 (최	차 환)	21	0,000	43,	000	253,000
매출공채	도 시 철	도 매출	는 공 채 실	판 매 액	77	7,252	△61,	000	716,252

○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의 세출예산을 경정함에 따라 제7조 **일반회계 예비** 비도 경정한 바, 본예산 심사시 ①일반예비비 1,081억 2,200만원과 ②목 적예비비 200억원을 포함한 1,281억 2,2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나, ①일 반예비비를 당초(1,081억 2,200만원)보다 119억 9,400만원 증액된 1.201억 1.60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됨

〈표 4-8〉 예산총칙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경정 현황

	회		계		[명	본	예	산	증	감	액	제 1 회 추 경 안
일	반	회	계	예	비	비			,122			,994	140,116
	1	일	반	예	비	비		108	,122		11	,994	120,116
	2	목	적	예	비	비			,000			_	20,000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목적예비비의 경우에 는 편성한도가 없으나, 일반예비비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 하여야 하는 바,
 - 제출된 추경안의 예산총칙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1,201억 1,600만원)는 일반회계 예산총액(36조 1,735억 8,100만원)의 0.3%에 해당되어 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추경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1,401억 1,600만원)는 '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1,281억 2,200만원)보다 9.3%, 119억 9,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액(36조 1,735억 8,100만원)이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33조 4,660억 8,400만원) 대비 8.0%, 2조 7,074억 9,700만원 증액편성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적정 규모가 편성

된 것으로 사료되며

■ 직전 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1,470억 7,000만원) 중 48.2%, 709억 9,5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결정된 예비비중 693억 4,900만원을 실제 지출한 사례가 있어 추경안중 예비비 편성액은 과소편성으로 사료되지 않음

3. 법정경비 등의 정산

- 관련 법령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 그 잉 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 리금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해 ① 지방세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정산금,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③재 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에 대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④지역자원시설세중 특정 부동산 증수분에 대한 전출금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산하였음
- 이번 회기에 제출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3조 2,548억 5,700만원)에 대해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8,355억 3,000만원), ②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4,413억 3,800만원), ③타회계 전출(530억 1,100만원) 등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 1조 3,298억 8,200만원을 정산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임

- 또한 서울시의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3조 2,548억 5,700만원에서 법정의무경비(1조 3,298억 8,200만원)를 차감한 1조 9,249억 7,500만원의 55.2%에 해당하는 1조 624억 8,7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고자 세출예산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세계잉여금(3조 2,548억 5,700만원)중 ①법정의무경비(1조 3,298억 8,200만원)와 ②재정안정화 계정 적립후 남게되는 여유재원은 8,624억 8,80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목인 순세계잉여금(3조 2,548억 5,700만원)에 포함되어 편성요청된 것임

〈표 4-9〉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용처

	구분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액	비고
	계			3,254,857	
법	정 의 무 경	d S	비계	1,329,881	
		소	계	835,531	
			조 정 교 부 금	685,287	보통세의 22.6%
	자 치 구 정 산 금		재 정 보 전 금	66,014	면허세 보전분, 공동재산세 ('22회계연도 정산분)
			시세 징수교부금	84,229	시세의 3%
		소	계	441,338	
	교 육 청 전 출 금		지 방 세 전 출	291,290	보통세 1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담배소비세전출	22,431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전출	127,616	지방교육세의 100% ('22회계연도 정산분)
		소	계	53,012	
			도시개발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30,660	'22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액 438억 중 70%에 대한 부족분 추경반영
	타 회 계 전 출 (교육비특별회계전출 제외)		주택사업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8,760	'22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액 438억 중 20%에 대한 부족분 추경반영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4,380	'22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액 438억 중 10%에 대한 부족분 추경반영
			소방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9,211	「지방서법」 제142조 「지방교부서법」 제19조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조례」 제4조
통합	· 남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	성화 계정 적립	1,062,487	순세계잉여금중 법정의무경비 정산후 잔액의 55.2% ※50%는 962,487임
여	°	지	원	862,487	

4.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여성가족정책실

-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사업별설명서 1권 p.44)
 - 동 사업은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하고자 서울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을 기정 예산(165억 4,9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 증액 편성(168억 7,000만원) 요청한 것임

〈표 4-10〉 소요예산 산출근거

산	출	내	용	예산안
출	}	연	금	320
	·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 추진		32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금번 제319회 정례회중 관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서울시의 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서울시가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세에서 49세 여성에게 1 인당 최대 200만원의 시울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에 해 당되어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예산안이 제출('23. 5.30)된 이후에도 협의 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타당성을 확 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에 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동 사업 관련 조례안이 지난 5월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23. 6. 5)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요예산 승인 여부는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결과와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을 여성가족재단의 고유사무로 인식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조례는 재단의 사업을 정하고 있어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사업이 동 조례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동 사업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증진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명시하고 있기에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여야 하는 사무로 판단되나, 금번 추경안에는 출연기관의 고유사무로 인식하여 출연금을 편성요청 하고

있어 서울시의 고유사무와 출연기관의 사무에 대한 경계 조정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88)

○ 동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완화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5,231억 100만원)보다 123억 8,900만원을 증액한 5,354억 9,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11〉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증감 산출내역	
계	(x281,746) 523,101	(x1,445) 12,389	(x283,191) 535,491		
				O 영유아보육료	12,389
				- 만0세 514,000원*273명*12개월*83.5%	1,406
자 치 단 체	(x281,746)	(x1,445)		- 만1세 452,000원*3,749명*12개월*83.5%	16,979
경상보조금	523,101			- 만2세 375,000원*940명*12개월*83.5%	3,532
				- 기관보육료 (382,000원*476명*12개월*83.5%) +2,295,000원	1,819
				- 국고보조금 △11,347,454,000원	△11,34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88

- 동 사업은 국비·시비·구비를 45:38.5:16.5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2년 9월,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 따라 시비를 대응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22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당초 가내시보다 14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확정내시하여 추가적인 시비의 대응편성이 필요한 사업임
- 그러나 사업부서는 국고보조금 증액 규모(14억 4,500만원)에 대응되는 시비 규모는 12억 3,600만원으로 검토되나 추경안에는 시비 109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사업부서는 '23년도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사업의 소요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변경내시 등을 통해 증액 교부될 국고보조금에 시비를 선제적으로 대응편성한 것이라고 하나
 -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추가적인 내시가 없음에도 시비를 먼저 과다 편성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로 회계연도중 국비가 추가 교부되지 않을 경우 기편성된 시비는 불용 등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어 동 사업에서 증액요청하는 재원중 국고보조금과 그에 대응 편성되어야 하는 최소 규모의 시비를 제외하고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104)

○ 동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 301억원, 서울형키즈카페머니 발행(신규)을 위한 사무관리비 8억 2,500만원 등 기정예산(214억 2,400만원) 보다 317억 5,000만원을 증액한 531억 7,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2〉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u>.</u> †		출			내			용	예산안
<u> </u>								계	31,750
사		무		관		리		비	825
	울형키즈카페! - 66명*25일*		—	·	20%				825
민	:	간		위		탁		금	104
1 -	선 키즈카페 · 3,910,000	_		1					35
· 야	천 키즈카페 - 관리운영 ^ㅂ - 사업비 3,	19,35	3,000원*	3개월					69
자	치 1	단	체	경	상	보	조	급	274
• 구특	립 키 <u>즈</u> 카페	운영비 증	증가분(기	존 21개 <u>-</u>	소)				23
∘ 구특	립 키즈카페	운영비 증	증가분(신	규 29개술	소)				609
	<u>'</u> } 키즈카페 · 25개소*1,(판 및 물	품구입	비지원]		25
민	간	위		탁	사		업	비	63
•	천 키즈카페 · 206.1646r	-							63
자	え]	단	체	자		본	보	조	30,100
∘ 구택	립 키 <u>즈</u> 카페	리모델링	비 증가는	분(증30개	소)				19,600
1 .	립 키즈카페 - 2,000,000								3,000
	립 키즈카페 · 4,000,000		-	(증5개소)				6,000
1 '	립 키즈카페 - 300,000,0		_						1,500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서울형키즈카페머니 발행(신규)은 민간 키즈카페에 대해 서울시의 인증을 거쳐 서울형 민간 키즈카페로 선정하여 이용자가 서울형 민간 키즈카페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는 할인권(상품권)을 발행하려는 것이나.

- 추경예산안('23. 5.30)이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인증된 서울형 민간 키즈 카페는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6월 9일에서야 비로소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전용 서울페이상품권을 발행하고자 사무관리비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증된 서울형 민간 키즈카 페가 없는 상황에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신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됨
- 또한 동 사업은 서울소재 민간 키즈카페중 인증기준 부합업체에 대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로 선정하고자 하나, 사업 근거의 조례로 제시한 조례에는 민간 키즈카페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과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민간 키즈카페를 잠식할 수 있어 인증제를 통한 지원 및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특정 민간 키즈카페에만 적용되는 제한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일 수 있어 조례상 근거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조례안이 지난 5월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23. 6. 1)된 바, 소요예산 승인 여부는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조례 안 심사 결과와 연동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중 자치구에 조성하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 서울시가 보증금을 포함 시설 조성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전부(시비 100%)를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서울시는 단기간에 서울형 키즈카페의 신속한 확산과 정착을 위해 시비 100%를 투자하여 자치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조성비 이외의 운영비 등 소요예산의 증가가 예상되어 소요재원 분담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177)

○ 동 사업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20만원) 등을 지원하고자 '23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4억 8,000만원)된 국고보조 사업으로.

〈표 4-13〉 추경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A-B)
계	(x240)	(x240)	(x-)
	754	480	27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40)	(x240)	(x-)
	754	480	274

※ 자료근거: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업별설명서, 1권, p.177

-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국비사업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청소년부모에게 자립촉진수당 등을 추가 지원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7,4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표 4-14〉 소요예산 산출근거

신	<u>.</u> †		출	<u>.</u>		내			용	예산안
	자	え]	단	체	경	상	보	조	금	274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아동 200명×200천원×6개월							240		
	。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 선발자 교통비 지원 - 부모 15명×100천원×6개월							9		
		성소년부모 - 부모 으	. 자립 촉 ?	신수당 지	원					25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 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 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 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서울시의 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청소년부모에게 ①자립촉진수당(10만원) 과 ②아동양육비(20만원→40만원으로 확대) 및 ③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 선발자 교통비(10만원)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바,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별설명서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월 21일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며 추경 예산안이 제출('23. 5.30)된 이후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 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이 시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자치단체 경상 보조(308-01)나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가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301-03)으로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하도록 하 고 있음에도 동 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설 정하고 있어 훈령 위반 소지가 있는 예산과목(통계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동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별개로 서울시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분리하여 소요재원 및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자체사업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5〉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의 내용

편성목	내용 (통계목)
301 일반보전금	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 ※ (광역)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이 시도비보조사업인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등이 아닌 301-03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은 301-02에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은 301-01에 편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 별표11

□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196)

○ 동 사업은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100만원)를 지원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102억 1,000만원) 등 10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16〉 소요예산 산출근거

신	<u> </u>		출	_		내			용	예산안
र्दे	<u>t</u>								계	10,240
	자	え]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0,210
	I		-리경비 7 2명*1/2(년		,000원*5	0%				10,148
		시구 사업 2,500,	홍보 000*25가]구						62
	사 무 관 리 비					30				
	사업홍보,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							3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명 시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어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더욱이 사업별설명서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예정'으로기재하고,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나, 추경 예산안이 제출('23. 5.30)된 이후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법령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에 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사업 관련 조례안이 지난 5월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23. 6. 5)된 바, 소요예산 승인 여부는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조례 안 심사 결과와 연동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동 사업은 현재 국가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형태로 제공)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17〉 기존 제도와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첫만남 이용권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상자	출생아동	산모
사용목적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의 건강권 강화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산후조리관련 비용
사 용 범위	※ 유흥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한약조제,
	용품제외), 레저업종 등을 제외	건강식품 구매 등)
사용기한	1년	1회성, 제한없음
지원금액	200만원	100만원
지원방법	바우처	현금 지급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6785 ('23. 4.18)

-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은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적절한 예 산과목(통계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18〉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의 내용

편성목	내용 (통계목)
301 일반보전금	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 ※ (광역)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이 시도비보조사업인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등이 아닌 301-03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은 301-02에 편성하고,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은 301-01에 편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 아울러 동 사업은 시, 구비(5:5) 매칭사업으로,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는 25개 자치구 조례 제정 및 자치구의 사회보장협의 절차 이행도 필수 적인바, 자치구의 사업 준비 상황 점검을 통해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편성 되는 재원의 불용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210)

○ 동 사업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중위소 득 65%이하)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자 '23년도 본예산에 편성(8억 3.200만원)된 국고보조사업으로,

〈표 4-19〉 추경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A-B)
계	(x413)	(x413)	(x-)
	1,267	832	434
사회보장적수혜금	(x282)	(x282)	(x-)
(국고보조재원)	564	569	△5
사회보장적수혜금	(x-)	(x-)	(x-)
(지방재원)	439	0	439
사회복지사업보조	(x131)	(x131)	(x-)
	263	263	0

※ 자료근거: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177

-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국비사업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청소년한부모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자 **사회보장적수혜금(자체재원)** 4억 3,900만원 을 증액 요청한 것임

〈표 4-20〉 소요예산 산출근거

신	ŀ	출			내			8	예산안
	사	회	보	장 (지 방	적 재원)	수	혜	금	439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 350명*200,000원*6개월 자립촉진수당 신규 지원(중위소득 65%~150%) - 20명*100,000원*6개월 								420
									12
	。 검정고시학습비 신규 지원(중위소득 65%~150%) - 5명*1,500,000원								7
	사	ই]	<u>보</u>	장 (국 고 보	적 조 재 원	수)	혜	금	△5
	。 아동양육비, 고교생 교육비 및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보조금 조정) △5,000,000원							<u> </u> 수당(국	△5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 고 있으며
 - 서울시의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 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서울시가 청소년한부모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 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행이 필요한 사업인 바.
 - 사업부서가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의뢰하였으나, 다만, 추경예산안이 제출('23. 5.30)된 이후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별개로 서울시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분리하여 소요재원 및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자체사업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만남, 서울팅(Seoul meeTing)** (사업별설명서 1권 p.236)

○ 동 사업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 한 것임

〈표 4-21〉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백만원)

산		출		내		예산인	예산안	
			총 계				80	
	사	무	관	리	비	80		
		○ 청년만남 테마별 :		72				
		- 프로그램 운영비	72					
		ㅇ 홍보비 등		8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을 용역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요 청한 바, 동 사업의 성격을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정하고 있는 "소규모 용 역"으로 판단하였을 수 있으나
 - 사업별설명서에는 동 용역의 수행주체를 "행사대행업체"로 기재하고 있으며 사업내용 또한 "테마별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사업은 행사성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사무관리비**가 아닌 **행사운영** 비 등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추경예산 심사과정중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정정하더라도 동 사업

은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 및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예산안 제출에 앞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수혜자의 적절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이행한 이후에 편성되어야하는 바.

- 금번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 서울시에서 실시한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 심사에는 동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 추경예산 심사과정 중 예산과목을 수정한다 하여도 현 시점에서 사전절차 이행은 불가한 바, 사전절차를 회피하고자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우 회편성한 사례로 오해받기 보다는 적정 예산과목(**행사운영비**)로 편성요청 하여야 할 것이며, 행사성 경비 편성에 앞서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2〉청년만남, 서울팅(Seoul meeTing)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8월 ~ 12월

○ 사업대상 :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미혼 청년(만25~39세)으로서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 수행주체 : 모임 및 행사 운영 경험이 풍부한 행사대행업체

○ 추진방법 : 용역

○ 사업내용 : 청년의 참여도가 높은 취미와 관심사에 기반하여 테마별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

- 주요테마 : ESG(환경·사회·지배구조)관련 활동, 요리(밥상), 스포츠,

교양, 기타 이색적인 활동 등으로 구성

- 참여인원 : 프로그램별 40~100명

- 운영일시 : 평일 저녁 또는 주말

- 운영방법 : [1차] 프로그램별 2~6명으로 팀 구성 및 프로그램 진행 →

[2차] 썸매칭 프로그램 활동(참여자 전체)

- 프로그램 구성(안) : 총 6회 프로그램 시범운영

· 씽글이들의 편의점 요리대회, 청춘 플로깅^{주1)}, 등산 클래스 등

○ 소요예산 : 80,000천원(전액시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238

주1) 플로깅 : Plogging. 이삭을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 upp과 영어단어 jogging

의 합성어로 체육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이 합쳐진 개념을 의미하는 신조어

2) 노동 · 공정 · 상생정책관

-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국가직접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289)
 -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으로 서울 소재 대학중 천원의 아침밥 참여 27개 대학에 대해 서울시 분담금(1식당 1,000원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각 대학별 조식 지원 대상 학생수에 따라 해당 대학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4-23〉 소요예산 산출근거

신	<u> </u>	출		L	내 용			예산안	
				총	계				252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252
			252						
	- 252,800명(27개교)×1,000원 = 252,800천원 252								

- 다만,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공립대학에 지원하는 소요예산은 **공립대** 학 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할 것인바,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중 서울시립대 지원분만큼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공립대학 운영비**로 통계목이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미래청년기획단

- □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351)
 - 동 사업은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국비·시비를 50:50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국비 7억원과 매칭시비 7억원을 포함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하고
 - 동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 성하였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지방재원)** △3억원 전액을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표 4-24〉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 감 액	추경(안)	증감 산출내역	
계	(x-) 380	(x700) 1,100	(×700) 1,480		
자 치 단 체	(x-)	(x700)	(x700)	O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1,400
경상보조금	-	1,100	1,400	156,000원×9,000명	1,400
사회보장적 수 혜 금	300	△300		O 보증보험료 지원	△300
구 에 금 (지방재원)	300	△300	_	200천원×1,500명 = 300,000천원	△300
				O 홍보 및 행정관리 등	80
사무관리비	80	_	80	- 언론홍보협력 지원 등 - 전월세보증보험료 사업개선 자문회의 등 - 사업추진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 - 유관기관 협력 및 행정관리 비용 등	50.0 2.4 20.0 7.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352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22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보건복지부 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O '23년도 본예산의 경우, 서울시의 지방재원 3억원으로 소요예산을 구성하였으나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은 국토교통부의 국비가 포함된 국고보조사업 인 바.
 - 관련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고보조율 등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담 수준 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추경예산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 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신설)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나, 6월 16일 현재 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내시된 국고보조금의 세입처리 및 시비의 대응 편성과 는 별도로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예산 편성전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 동 소요예산의 경우, 법정절차 이행이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절차적 합리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4) 경제정책실

- □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별설명서 1권 p.499)
 - 동 사업은 낙후된 5대 특화업종(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의 현장근무 위해요인제거 및 생산설비 지원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도모하고자 기정예산(48억 700만원)보다 50억 5,000만원 증액된 98억 5,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5〉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감 액	추경(안)	증감 산출내역
계	(x-) 4,807	(x-) 5,050	(x-) 9,857	
사무관리비	(x-) 300	(x-) 200	(x-) 500	O 의료제조업 생산환경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시 책 추 진 업무추진비	(x-) 5	(x-) -	(x-) 5	O 작업환경개선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50 -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x-) 1,902	(x-) 2,350	(x-) 4,252	○ 4대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 2,145 6,130,000원×350개 = 2,145,500천원 ○ 4대업종 실태조사 및 운영관리 용역 200 200,000,000원 ○ 4대업종 성과보고회 등 사무관리비 4 4,500,000원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x-) 2,600	(x-) 2,500	(x-) 5,100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2,500 6,250,000원×400개 = 2,500,000천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500

- 사업부서의 방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제조업 생산 환경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1억 5,000만원)의 경우에는 실태조사 등 단순 조사뿐만 아니라 "지원품목 컨설팅", "정리정돈 컨설팅", "자율관 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초기부터 완료까지 업체별로 전반적인 작업환경을 조사·분석하고 종합적인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무관리비로 추진할 수 있는 단순용역이 아니라 학술용역으로 사료되어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서울시의 조례는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 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경예산 심사과정중 예산과목을 수정한다 하여도 현시점에서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한 바,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성과관리 용역에 대한 소요 예산 1억 5,000만원은 전액 감액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 이후 필요시 다음 추경 등을 통해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562)

○ 동 사업은 금융중심지 여의도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어 전자메뉴판을 보급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6〉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산출근거

Ą	<u>\</u>		출	Ţ		내			용	예산안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600
			일반음식 원*300개				한 태블	릿 메뉴판	보급	600

- 동 사업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300곳에 1년간 사업체당 10대의 테블릿 메뉴판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체 1곳당 연간 2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추진 근거로 서울시 조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 동 규정은 ①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관한 국제 동향의 파악, ②서울 금융중심지 내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홍보, ③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④시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및 세미나 등 개최, ⑤그 밖에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에서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여의도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을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수 행자로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태블릿 메뉴판을 보급한다고 하여 외국 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환경으로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해당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재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만일 테블릿 메뉴판 보급이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에 필수 요소로 인정한다 하여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요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에 명확한 근거 마련을 명시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소벤 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지 원사업에 해당되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현재까지 관련 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중소 기업 지원사업 사전 협의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부서는 동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지침이 정하고 있는 "단년도 사업"은 중소기업, 창업자, 소상공인 진흥을 위해 워크숍, 박람회, 친목행사나 실태조사,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열거하고 있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원을 편성하여 영등포구 소재 300개 점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단년도로 한정한 사업으로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음

5) 도시교통실

□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사업별설명서 1권 p.868)

○ 동 사업은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교차)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을 연결하고자 시설비 27억원과 공사에 따른 **감리비** 3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7〉 소요예산 산출근거

신	<u> </u>		출		내	අ	예산안
			<u>총</u>	계			3,000
	시			설		비	2,700
		○ 공사비					2,700
	감			리		비	300
		○ 감리비					300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공사비(**시설비** 27억원, **감리비** 3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23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단계부터 예산의 이월이 전제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업별설명서의 "2023년도 추진일정"에는 공사시행을 '23년 1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회계연도중 공사를 추진하는 기간은 단 2개월 뿐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실제소요예산(2개월분)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이월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산집행시 부득 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편성단계에서부터 이월이 전제된 예산편성은 지양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8〉 사업별설명서 2023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 진 기 간	예산집행계획	추	진	세	부	내	क
계		3,000						
교통안전시설 심의상정	'23.05~'23.06		교통역	<u></u> 안전시설	심의 왼	<u></u> 로		
실시설계 및 공사중소통대책	'23.07~'23.08		도면,	내역서	, 시방시	서 작성		
공사계약 및 발주	'23.09~'23.10		일상7	낚사, 계	약심사			
공사시행 및 개통	'23.11~'24.12	3,000	-	상설치, 사로), 교		_		

주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870

6) 문화본부

- □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사업별설명서 1권 p.1037)
- 동 사업은 문화재를 활용한 특색 있는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국비 4 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9〉 추경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A-B)
계	(x780)	(x320)	(x460)
	1,365	560	80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780)	(x320)	(x460)
	1,365	560	805

※ 자료근거: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1037

- 사업내용중 정동야행은 '23년도 본예산에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국비 1억 1,000만원이 포함된 2억 7,8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나, 사업수행기관을 서울시에서중구로 변경하고자 투자심사를 거쳐('23. 3.31) 기편성된 행사운영비 등을 전액 감조정(△2억 7,800만원)하고,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종로 문화재야행은 '22년 9월, 문화재청의 문화재 야행 사업 국고 보조금 교부 사전통지에 따라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이었으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1,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4-30〉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소요예산산출근거

(단위:백만원)

,	산	- 출			내				예산안	
	자	え]	단	체	경	상	보	조	금	805
	· 중구 정동야행192.5· 종로 문화재야행612.5									
		※ 중 구(국 110,000천원 / 시 82,500천원) 종로구(국 350,000천원 / 시 262,500천원)								

- 관련 법령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기준의 경우에도 행사성 사업은 계획 수립 이후 사업 시행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종로 문화재 야행은 투자심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별설명서에도 '23년 7월 14일 투자심사를 이행할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소요예산 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1113)

○ 동 사업은 자치구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1〉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신	<u>.</u>		출			내			용	예산	안
Ň	<u>\$</u>								계		787
	사		무		관		리		ㅂ]		5
		○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 회의수당 150,000원 * 6명 * 4회 - 자료제작비 300,000원 * 4회 - 일반운영비 50,000원 * 4회								3.6 1.2 0.2	5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782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 2,000,000원 * 346개관									692
		 작은도서관 우수사례 공모사업 1,800,000원 * 25개구 * 2개관 									90

○ 동 사업은 '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 심사결과 예산조정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본예산에는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22년 12월, 사업부서는 전 자치구에 동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바, '23년 5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금심의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8,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2〉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진행 경과

(단위 : 백만원)

일 정	절 차	세 부 내 용				
'22. 10.	지방보조금심의	'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 예산 조정 필요				
'22. 11.	예산안 제출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23년도 예산안 미편성				
'22. 12.	사업종료 통보	'23년도 예산 미편성으로 자치구 지원 종료 통보				
'23. 1.	예산 재편성 지시	시장,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재개 방안 검토 지시				
'23. 4.	사업 성과 분석	작은도서관 운영성과 분석 - 평가결과 A등급인 우수 작은도서관 기준 지원결정				
'23. 4.	사업추진 방침수립	평과결과 A등급인 작은도서관 346개 지원 및 우수도서 관 추가지원에 대한 방침 수립				
'23. 5.	지방보조금심의	'23년도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 적정				
'23. 5.	추경안 제출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23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 다만, 사업폐기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정책추진 여부가 변경되는 것은 시민들이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향후에는 정책추진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3〉최근 3년간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예산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근 거				
2023년도 제1회 추경	787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2,000,000원 * 346개관 = 692,000천원 ○작은도서관 우수사례 공모사업 1,800,000원 * 25개 자치구 * 2개관 = 90,000천원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5,000,000원 = 5,000천원				
2023년도	-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 ※'22년도와 동일규모로 보조금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예산 조정 필요"				
2022년도 56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1,600,000원 * 350개관 = 560,000천원 ※시재정이 열악하여 지원단가를 전년대비 80%로 조정				
2021년도	700	○작은도서관 운영비지원 2,000,000원 * 350개관 = 700,000천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1114 서울특별시, 「202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문화본부」, p.528

7) 관광체육국

- □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1권, p.1139)
 - 동 사업은 기정예산(18억 9,300만원)보다 132.3%, 25억 500만원을 증액한 43억 9,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무관리비** 18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관광객 대상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설치하고자 **시설비** 7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4〉 소요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 경 안	비고
계	1,893	2,505	4,398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30	-	30	
사 무 관 리 비	640	1,805	2,445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1,800백만원송현동빛축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5백만원
국 외 업 무 여 비	75	-	75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35	-	35	
특 정 업 무 경 비	54	_	54	
민간경사사업보조	1,050	_	1,050	
국 제 부 담 금	8	-	8	
시 설 비		700	700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350백만원 * 2기

○ **사무관리비**로 증액요청된 18억원에 대해 사업별설명서에는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로만 기재하고 있고, 사업내용에도 ①시민 및 관광객이 참여가능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설치 및 운영, ②콘텐츠 및 장소에 스토리텔링을 더

하여 관광 명소화, ③전세계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 서울을 알릴 수 있도록 집중 홍보라는 단 세 줄만 기재되어 증액요청된 **사무관리비** 18억원 편성여부를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설비(7억원)의 경우에도 증감내역에 기재된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3억 5,000만원 * 2개소)외에는 사업별설명서에는 사업내용이나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안을 제출('23. 5.30)한 이후 '23.년 6월 8일 관련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지난 3월 관련 용역이 추진되었으나 해당 용역의 준공시점은 7월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내용의 구체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방침에는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요청한 25억원을 ①참여형미디어 콘텐츠(9억 5,500만원), ②생활밀착형 놀이공간(7억 5,500만원), ③체험형 디지털 가상세계 콘텐츠(4억 6,000만원), ④민관협력 공익 캠페인 (1억 5,000만원), ⑤안전 및 시설 유지관리(1억 8,000만원)으로 지출할계획으로
 - 이중 ③체험형 디지털 가상세계 콘텐츠(4억 6,000만원)가 사업별설명 서에 기재된 시설비(7억원)로 증액요청한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3억 5,000만원 * 2개소)로 사료됨

- 예산확보 후 지출시점에 필요하다면 전용 등을 통해 통계목을 변경하여 소 요예산을 조정하면될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안전부의 기준 은 시설비에 대해 전용 제한을 두고 있어 사업부서의 방침대로 사업을 추 진하면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용처리가 불가 피할 것임
- 따라서 동 세부사업중 (가칭)플레이어블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증액 요청된 25억원(**사무관리비** 18억원, **시설비** 7억원)은 첫째, 사업실행방안 용역이 준공되지 않아 추진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둘째, 비용추계가 불 확실하여 산출근거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요예산의 내역 등을 신뢰할 수 없는 바,
 - 금번 추경에 편성요청된 플레이어블 시티 프로젝트 관련 소요예산 25억원을 전액 감액조정하고, 향후 실행방안 용역이 준공된 이후 소요예산을 정밀 추계하여 필요시 별도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5〉 플레이어블 시티 프로젝트 소요예산(안)

분 야	세	부 사	업	명	세	부	내	역	사업비
				계					2,500
	키넥트	트 스트리	<u>E</u>	조성		서, 디지털 거- 획, 설치, 운영	울 등 장비 임 ^다 비 등	H	200
① 참 여 형	맞춤형	힐링 메시지	보드	<u>.</u> 설치		서, 메시지보드 로그램 제작 5	. 등 장비 임다 및 운영비 등		200
미디어콘텐츠	' 빛 의	놀 이 터	· '	조 성		명, 레이저 등 시 조형물 제작	-		345
	미디어	그래피티	아트	설치			l릿 등 장비 인 녕비, 인력운영비		210
	인터렉	티브 공중	전화	부스		스 하우징 설7 터렉티브 콘텐	계 및 제작 츠 기획 및 제 ²	작	237
②생활밀착형	길거리	변신놀 [©]	기터	조성		로그램 제작 5 닥 공간 시공	-		200
놀 이 공 간	두근두근	그 복불복 '해	친의 일	』 설치		치의 입 디자인 불복 프로그램	<u>]</u> 및 제작 기획 및 제작		180
	추억의	Y2K 오	락실	조성		스제작 및 소 ^교 니터, 조이스틱	프트웨어 개발 등 장비 제직	-	138
③ 체 험 형 디 지 털	계류식	디지털 소밍	풍등	- 운영		그머신, 풍등기 프트웨어 개발			280
가 상 세 계 콘 텐 츠	랜드마=	크 건물프로젝	년 맵	U 시행		미지 콘텐츠 저 가사례비, 운영	케작 녕비, 인력운영비] 등	180
④ 민 관 협 력 공익 캠페인	인기 카	릭터 활용 -	공익 🍍	갬페인		페인 팻말 등 리 및 유지·보·			150
⑤안전 및 시 설 유 지 관 리	안전관	리, 시설유지	관리	홍보		전관리, 시설 . 설팅, 자문회의,	보수 및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 등	18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5765 ('23. 6. 8) "플레이어블 시티 프로젝트(가칭) 추진계획" 중 소요예산(안)에서 발췌

8) 평생교육국

□ 중장년 직업교육 경비지원 (사업별설명서 2권, p.1236)

○ 동 사업은 서울시 거주 만 40세~64세 저소득층 중장년에게 직업교육강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보조** 3억원이 포함된 3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6〉 소요예산 산출근거

7	<u>\</u>		출		I	내		용	예산안
- 1	<u>ই</u> 5							계	303
	사		무	į	<u></u>	리		비	3
		년물 등 0,000	· 제작 원*6월						3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300
			업교육 경 원*500명	비지원					30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회보 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 고
 - 서울시의 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이 서울시에 저소득층 중장년에게 직업교육강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경비를 지원(직업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어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

보장제도 협의 이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 계획서에는 시범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어 시범사업의 경우 사회보장 협의 제외 대상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으나, 지침은 한시적 일회 성 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 적 재원으로 시행하여 단년도 내 일몰되는 사업과 일회성 성격의 시민참여 예산 또는 공모사업 등은 제외 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정책실험)사업은 협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은 사회보장 시전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추경예산안이 제출('23. 5.30)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보장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절차 이행 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 방침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50플러스재단과 함께 추진하려는 것이나, 서울시의 조례는 '시장은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50플러스재단에게 위탁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률 및 조례에 근거 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표 4-37〉 사업 추진 체계



- 서울시 조례는 중장년의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중장년 500명 개인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로 사료되지 않음
- 다만, 사업부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은 만 40세~64세 저소득층 중장 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조례 등에 근거없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 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어 소요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상 지원 근거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9) 디자인정책관

□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 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별설명서 2권, p.1739)
- 서울빛 신규정립 (사업별설명서 2권, p.1743)
- 빛·미디어아트 정책개반 조성 (사업별설명서 2권, p.1759)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펀(FUN)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의 경우, 편성 요청된 **사무관리비**(2억원)를 펀 디자인 기본원칙 정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방식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사업별 설명서와 추진계획에 기재하고 있음

〈표 4-38〉 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신	-		출		내		예산안
	사		무	관	관 리		200
		• 제안/	1				
		· 펀(Fl		198			

- 서울빛 신규정립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서울빛 색 구현 및 적용방안 매뉴얼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7,700만원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출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4-39〉서울빛 신규정립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출 내			8	예산안
	٦	\	무	관	관 리		77
	제안서평가 참석수당 : 200,000원*8명*2회					3	
	· 사전 자문수당 : 200,000원*2명*1회				0		
] : 74,235,000			74

- **빛·미디어아트 정책기반 조성**의 경우에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무관리** 비(1억 2,500만원)를 도시 빛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등 권역별 미디어 아트 타당성 조사에 지출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4-40〉서울빛 신규정립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신	<u> </u>	출		내	8	<u>연위 : 확인권)</u> 예산안
	사	무	관	리	ㅂ]	125
	0	· 권역별 실태조사, 타당성조사 연구 인력비(용역비)				
		- 책임연구원(1명) : 3,000,000원*5개월*1명				
		- 연구원(5명) : 2,600,000원*5개월*5명				
		- 연구보조원(2명) :	1,500,000원*5	개월*2명		15
	0	실태조사 연구경비, 2	자문회의 등 추진	ㅂ]		30
		- 유인물비 : 5,000	,000원*1식			5
		- 전산처리비 : 6,00)0,000원*1식			6
		- 연구재료비 : 5,00	00,000원*1식			5
		- 자문 및 회의비 :	200,000원*10명	*7호]		14

○ 추경안에 증액 요청한 ①펀(FUN)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의 전문업체 용역 (사무관리비 1억 9,800만원), ②서울빛 신규정립을 위한 용역(사무관리비

- 7,400만원) 및 ③빛·미디어아트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사무관리비 9.500만원)은 사무관리비를 통해 전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는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회신결과를 고려하면, 사무관리비로 편성가능한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로 매년 우리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시 유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예산과목에 해 당되나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일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에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의 범위에 속해야할 것"으로 회신하고,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를 예시로 적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현행 기준이 일반용역에 대한 세출과목을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아 사무관리비 편성을 통한 일반용역 추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하고 있어 중앙부처에 적정한 세출과목이 생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빛·미디어아트 정책기반 조성**의 주요내용은 빛미디어아트 관련 실 태조사 및 분석, 빛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전시확산 추진과 장단 기 비전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 지침은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원, 학회 등)에서 수행하는 기본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정책과제 개발 성 격인 경우 학술용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 사업은 학술용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에도 학술용역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 기준은 모든 학술용역은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조례는 용역 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학술용역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학술용역심사 등의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우회 편성요청된 것으로 사료되어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하야 할 것으로 파단됨
 -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심의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 사전심사 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안이 이미 시의회에 제출된 현시점에 비추어 사전절차 이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용역비용(1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필요시 관련 절차 이행후 소요재원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 운영 (사업별설명서 2권 p.1754)

○ 동 사업은 광화문 일대에서 빛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기정예산(23억 3,500만원) 보다 2억 7,000만원 증액한 26억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1〉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 운영 산출근거

신	<u> </u>	출		내	용	예산	안
	행	사	운	පි	비		270
		 축제 기획 및 용역 운 용역 운영인력 인건^b 축제 안전관리 요원] 3,450,000 인건비(야간)]	<u> 월</u> *2인	4일	6 44	50 120 60
		 축제 홍보 비용 SNS계정 이벤트 등 인플루언서 활용 홍호 개막식 행사 개최 	_			20 10	30
		- 개막행사 진행자 사 - 개막행사 물품대여 !				5 5	10

- 관련 규칙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중앙투자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 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기준에도 투자심사 대 상 행사성 사업은 계획 수립 이후 예산 편성 이전에 투자 심사 절차를 이행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해당(총 사업비 35억원)되어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 결과, 지 방재정영향평가 등 법적 사전절차 이행과 다중 운집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유 등으로 "재검토"로 결정된 바, 법정 선행절차 이행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10) 푸른도시여가국

□ 기간제노동자 임금 부족분 추가 편성 사례

-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2101)
-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2107)
-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2115)
- 여의도공원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2119)
-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2124)
- ■서서울호수공원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2130)
- 경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2134)
-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2138)
- ■보라매공원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2146)
-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2158)
-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사업별설명서 2권, p.2170)
- 양묘장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2권, p.2175)
- 푸른수목원 운영관리(사업별설명서 2권, p.2179)
- 장미원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2권, p.2184)
-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2권, p.2189)
-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사업별설명서 2권, p.2193)
-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2권, p.2203)
- 식물원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2권, p.2208)
-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18개 세부사업은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 간제노동자의 기본급 및 4대보험료 등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간제근 로자등보수 11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 설명서와 방침서에는 당초 본예산에 기간제노동자 임금단가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서울시 생활임금이 고시되어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매년 노동정책담당관에서 기간제노동자임금지급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서울시 생활임금은 조례에 따라 매년 9월경에 고시되어 서울시 예산편성 추진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본예산 편성 시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서울 시 생활임금은 법령상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기본급을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통상수당이 포함되어 생활임금(월급)을 상회하므로 관련 조례를 준수한 것으로 사료됨

〈표 4-42〉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통상임금 산출내역('22~'23)

(단위 : 원)

					<u>(근거 · 근)</u>
구	판	2 0 2 2 본 예 산	2 0 2 3 본 예 산	2 0 2 3 추경예산안	비 고 (산 출 내 역 등)
7	본 시 급	9,160 (최저임금)	9,620 (최저임금)	10,578 * (시중노임단가)	* 추경예산안 기본시급 기준 : '22년도 하반기 제조업 시중 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 기준)
1	기 본 급	1,914,440	2,010,580	2,210,802	· 기본시급 × 209시간
2	기본수당	160,000	160,000	160,000	· 교통수당(60,000원) · 급식수당(100,000원)
통 상 수 당	추가지급 100,000		100,000	100,000	· 위험수당(50,000원) · 위생수당(50,000원)
주 1)	처우개선 수 당	200,000	200,000	200,000	
	상임금 ① + ②)	2,374,440	2,470,580	2,670,802	·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수당
서 생	울 칼 임	2,250,094	2,331,813	2,331,813	

주1) 통상수당은 매월 정기·일률·고정적인 지급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서울시의 규정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노동자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①'22년 하반기, 기본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23 년도 본예산에 편성요청하였으나, ②'22년 12월 21일, 편성요청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2023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임금기준 방침'을 수립하여, ③'22년 12월 22일, 소관 기관에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23년도 기간제노동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하였고, ④'23년 5월, 기본급 상향에 대한 초과금액(부족분)을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4-43〉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신	<u>.</u>			<i>호</i>	Ī		내			용	예	산	안
	7	기 간 제 근 로					자	ᆫ	보	수		2	256
		• 기본급 부족분 : 7,660원 ^{주1)} *27일*117명*8.5개월									2	205	
			4대보험.				율적용)						50

- 주1) 시중노임단가(10,578원) '23년도 최저임금(9,620원) = 차액(958원) 958워/시간 * 8시간 = 7,660워
- 다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기간제노동자 급여수 준을 상향시킨 것은 이해되나,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결과로 사료됨
- 또한 관련 법령은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훈령에서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지급 기준액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先 추경편성, 後 예산집행이라는 절차가 준수되어야 함에도 사후 치유적인 방법으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하여 예산을 경정하는 유사 사례가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4〉기간제노동자 임금 부족분 추가 편성 사업

(단위 : 백만원)

				(난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푸른도시여가국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2,845	210	3,055
"	서울로 7017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1,198	41	1,240
"	월 드 컵 공 원 유 지 관 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3,650	256	3,906
"	여 의 도 공 원 유 지 관 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239	19	259
"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372	30	403
"	서서울호수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792	21	813
"	경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452	37	489
"	선 유 도 공 원 유 지 관 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266	21	288
"	보 라 매 공 원 유 지 관 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791	39	831
"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 지 관 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1,245	77	1,322
"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2,317	173	2,491
"	양 묘 장 유 지 관 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1,394	110	1,505
"	푸른수목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806	53	859
"	장 미 원 유 지 관 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253	16	270
"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 및 유지 관리		55	7	63
"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113	7	120
"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 지 관 리		481	31	513
"	식물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56	3	60

※ 비고 : 사업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통계목) 예산액만 표기

11) 시립미술관

□ **시립미술관 유지 관리** (사업별설명서 2권 p.2403)

○ 동 사업은 시립미술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시설비** 4억원을 증액한 11억 3.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5〉시립미술관 유지 관리 산출근거

,	산	출	내	용	예산안
	ス] 설	1	비	400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관련 사실시설계 용역비설계공모 및 보상비기존확보로 인한 가용재원	업비		400 550 200 △350

- 동 사업은 '25년 12월까지 329억원을 투입하여 시립미술관을 리모델 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안에는 리모델링 관련 설계용역비 4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관련 규칙은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중앙의뢰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부서는 사업증축면적이 기존연면적의 30% 미만에 해당되어 중앙의뢰 심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동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투자심사 결과, 공간별 세부활용계획 등 사업계획 보완 후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실시설계 전에 2단계 심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2단계 심사' 결정으로 확인되는 바,

- '22년 12월, 투자심사 당시에는 사업비를 329억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단계 심사이후 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공사비의 적정규모가 불명확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 소요예산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O 아울러 관련 법령은 건물 증축 등을 통해 취득하려는 재산의 기준가격 및 건축비 등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일 경우, 편성요청된 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로부터 먼저 의결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23년 9월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고, 관련 의안의 경우에도 '23년 6월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시립미술관에 대한 일부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예산편성전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편성요청된 시설비 4억원의 승인은법정절차를 이행한 이후로 유보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6〉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규모

(단위: 백만원)

O 사업규모 : 부지면적 25,420.9 m² / 연면적 16,433.8 m²

(기존 13,433.80㎡-서울시립미술관 전시동 사무동)

O사 업 비: 32,900백만원

O주요내용

- 전시동 리모델링 11,333.14㎡, 전시동 등 증축 3,000㎡

- 전시동 리모델링 : 지하2층~지상3층까지 11,333.14㎡

- 전시실 등 증축 : 전시동 앞마당 지하2층 1,200㎡ , 지하1층 1,800㎡

※ 자료근거 : 서울시립미술관, 시설과-3444 ('22.12.21)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투자심사 검토보고"

5. 세출예산 감액 편성요청 사업

-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38개 세부사업에 △1조 1,784억2,9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포함한 82개 세부사 업 △6,005억 2,2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하고,
 - 특별회계의 경우,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포함한 56개 세 부사업에 △5,779억 6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4-47〉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요청한 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회계명	세부 사업수	세부 사업수 기정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총	계	138	7,052,097	1,178,429	5,873,668
	일 반 회 계	82	4,967,323	600,522	4,366,800
	특 별 회 계	56	2,084,774	577,906	1,506,867

- 감액 요청된 138개 사업중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78억 8,900만원)을
 포함한 20개 사업은 전액감액을 요청한 사업으로 △392억 8,000만원을
 감액 요청한바.
 - 소요예산 전액을 감액 요청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은 영등포 고가철거 및 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해 7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과 우회도로인 '국회대로' 공사와 시기가 겹쳐 공사일정을 '24년도로 조정함에따라 기정예산 78억 8,9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4-48〉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편성 요청한 현황

실 · 본 부 · 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안 전 총 괄 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7,889	△7,889	-
도 시 교 통 실	도로 자하 공영주차장 건설(방화대로)	7,207	△7,207	_
도 시 교 통 실	신논현역 등 5개소 광역버스 환 승 정 류 소 환 경 개 선	7,000	△7,000	_
안 전 총 괄 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5,774	△5,774	-
한 강 사 업 본 부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칼라기 조성	4,275	△4,275	-
한 강 사 업 본 부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2,810	△2,810	_
푸른도시여가국	보라매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983	△983	-
균 형 발 전 본 부	노들나루공원 재조성 사업	800	△800	_
푸른도시여가국	북서울꿈의 숲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630	△630	-
물 순 환 안 전 국	흑석 빗물팔장 이전 및 용용증대 시업	614	△614	-
물 순 환 안 전 국	흑석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294	△294	_
문 화 본 부	정 동 야 행	278	△278	-
문 화 본 부	장원중 생활SOC복합화사업	225	△225	_
평 생 교 육 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지원)	140	△140	_
물 순 환 안 전 국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100	△100	-
노 동공 정상생정책관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95	△95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80	△80	-
문 화 본 부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 간 투 자 사 업 관 리	43	△43	-
경 제 정 책 실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24	△24	-
균 형 발 전 본 부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18	△18	_

-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액요청한138개 사업중 50억원 이상 감액요청한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2,300억 1,900만원)을 포함한 23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요청한 사업의 경우 99.3%, △1조 1,706억 3,400만원으로 검토됨
 - 50억원 이상 감액 요청한 사업중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관련 법 령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정전출금으로 1조 5,51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등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한 바,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액분(△ 3,724억)과 연동하여 △2,300억 1,900만원을 감액 요청한 것임
 -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23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산세 등의 세입예산이 감소하고, 이와 연동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2,300억 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657억 1,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328억 5,900만원) 등도 감액요청 되었음

〈표 4-49〉 감액요청된 사업중 50억이상 감액 요청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 · 본 부 · 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액	한위 : 백만원) 추경안
균 형 발 전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551,371	△230,019	1,321,351
기 획 조 정 실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도 시 개 발)	256,100	△205,400	50,700
재 무 국	재 정 보 전 금	1,993,531	△202,785	1,790,745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175,069	△68,632	106,436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76,982	△53,027	123,955
주 택 정 책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재촉)	265,500	△51,400	214,100
주 택 정 책 실	신 혼 부 부 청 년 등 임 차 보 증 금 지 원 사 업	146,629	△36,000	110,629
도 시 교 통 실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87,273	△32 , 859	454,413
주 택 정 책 실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도 정 계 정)	221,624	△32 , 859	188,764
주 택 정 책 실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재 촉 계 정)	221,624	△32 , 859	188,764
주 택 정 책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441,600	△21,600	420,000
도 시 교 통 실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금 (주 차 장 관 리 계 정)	197,700	△18,656	179,044
주 택 정 책 실	역 세 권 청 년 주 택 매 입	116,804	△17,918	98,886
시 민 건 강 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17,857	△14,142	3,71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63,273	△12,620	50,653
기 획 조 정 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129,627	△11,413	118,213
안 전 총 괄 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 환 경 공 간 조 성	15,100	△9,000	6,100
안 전 총 괄 실	영 등 포 로 터 리 구 조 개 선 (교 통 개 선 분 담 금)	7,889	△7,889	_
도 시 교 통 실	도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방 화 대 로)	7,207	△7,207	_
도 시 교 통 실	신논현역 등 5개소 광역버스 환 승 정 류 소 환 경 개 선	7,000	△7,000	_
안 전 총 괄 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5,774	△5,774	_
노 동공 정상생정책관	양 곡 도 매 시 장 이 전	9,020	△5,400	3,620
안 전 총 괄 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15,800	△5,062	10,738

Ⅴ. 기타검토 의견

1. 사업별설명서 작성 개선 관련

-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행정안전부 기준을 통해 예산서 등 주요 서식을 정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 서식 또한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준에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사업별설명서 등을 작성할 때 산출근 거내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 록 정하고, 산출근거의 산출기초 부분 표시는 자치단체별 선택사항으로 정 하고 있음
 - 금번 추경안에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6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을 통해 지방채 △1,000억원을 감조정하여 세입,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음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지방채 재원을 감조정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세출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유와 재원 구성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향후 당해연도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서울시 소요 예산과 다른 보조 재원의 구성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 기준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명 옆에 '(신규)' 라고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특히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

적 급박함이 있거나(시급성), 지난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예측불가능성) 등이 심사기준이 될 수 있어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동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부사업명 옆에 신규 사업임을 명시하여 추경안에 포함된 신규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이 심사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에도 사업명칭 부여기준은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면서 『△△사업』, 『△△업무』, 『
 △△실시』, 『△△추진』등 사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경제정 책실 소관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
 - 복지정책실 소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 도시교통실 소관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문화본부 소관 아트서울 활성화 사업, 엄마 북돋움 사업,
 - 시민건강국 소관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지원 사업.
 - 주택정책실 소관 희망의 집수리사업,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 균형발전본부 소관 노들나루공원 재조성 사업,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 장 이전사업, 물순환안전국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흑석 빗물펌프장

- **이전 및 용량증대 사업,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등은 사업명칭 부여 기준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지침에는 사업명을 정할 때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본부 소관 아트서울 활성화 사업, 엄마 북돋움 사업은 사업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유사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출자·출연동의가 필요한 사업

-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5)
-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23)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44)
-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1권, p.311)
-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1권, p.464)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614)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별설명서 1권, p.752)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별설명서 1권, p.758)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별설명서 1권, p.762)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별설명서 1권, p.770)
-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 (사업별설명서 1권, p.787)
- 서울교통공사 채무상환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965)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1145)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별설명서 2권, p.1685)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2권, p.1719)
-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사업별설명서 2권, p.1910)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 소요예산중 출자 또는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금번 제319회 정례회중 서울시 의 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18개 세부사업과 관련된 13건의 출자·출연 동의안 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표 5-1〉'23년도 제1회 추경안 관련 출자·출연 동의와 관련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23년도 제1회 추 경 안 출자·출연금	(의 안 먼 오)
홍보기획관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7,329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 동의안 '23. 6. 1 '23. 6.20 (의 안 번 호 8 9 0)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740	(의 안 번 호 8 9 1)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320	(의 안 번 호 892)
디지털정책관	서 울 디 지 털 재 단 출 연	92	서 울 디 지 털 재 단 출 연 동 의 안 '23. 6. 1 '23. 6.21 (의 안 번 호 8 9 3)
경제정책실	서 울 경 제 진 흥 원 출 연	4,440	서 울 경 제 진 흥 원 출 연 동 의 안 '23. 6. 1 '23. 6.22 (의 안 번 호 8 9 4)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168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 연 동 의 안 '23. 6. 1 '23. 6.19 (의 안 번 호 8 9 5)
도시교통실	지 하 철 1 ~ 4 호 선 노 후 시 설 재 투 자	2,513	
도시교통실	지 하 철 5 ~ 8 호 선 노 후 시 설 재 투 자	3,500	
도시교통실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9,134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 자 동 의 안 '23. 6. 1 '23. 6.22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 기 질 개 선	15,182	(의 안 번 호 8 8 8)
도시교통실	서 울 교 통 공 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	51,060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채무상환	155,000	
문화본부	세 종 문 화 회 관 출 연 금	160	세 종 문 화 회 관 출 연 동 의 안 '23. 6. 1 '23. 6.23 (의 안 번 호 8 9 6)
관광체육국	서 울 관 광 재 단 출 연 금	6,912	세 종 문 화 회 관 출 연 동 의 안 '23. 6. 1 '23. 6.23 (의 안 번호 8 9 6) 서 울 관 광 재 단 출 연 동 의 안 '23. 6. 1 '23. 6.21 (의 안 번호 8 9 7)
재 무 국	한 국 지 방 세 연 구 원 법 정 출 연 금	2,643	한국시방세연구원에 대한 출 연 동 의 안 '23. 6. 1 '23. 6.21 (의 안 번 호 1 5 4)
디자인정책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577	서 울 디 자 인 재 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 '23. 6. 1 '23. 6.19 (의 안 번 호 8 9 8)
주택정책실	역 세 권 청 년 주 택 S H 공 사 선 매 입	59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경제정책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82,00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의 경우, 도시교통실 소관 6개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금 2,463억 8,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사업중 ①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는 '23년 국비(429억 9,500만원)에 대한 매칭시비 부족분 25억 1,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②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5억원 ③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91억 3,400만원, ④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151억 8,200만원, ⑤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 510억 6,000만원 ⑥서울교통공사 채무상환 1,550억원을 증액편성요청하고 있음

〈표 5-2〉「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과 관련된 6개 세부사업 출자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합 계	457,259	210,869	246,389
도시교통실	1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1,740	39,226	2,513
도시교통실	2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3,450	39,950	3,500
도시교통실	3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69,092	49,958	19,134
도시교통실	4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23,185	8,003	15,182
도시교통실	5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	124,791	73,731	51,060
도시교통실	6	서 울 교 통 공 사 채 무 상 환	155,000	0	15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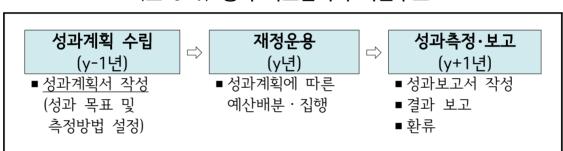
※ 자료근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및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동의안 재구성

- 재무국 소관 **한국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을 통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 으나,
 - 동 출연금과 관련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지난 '22년 8월 제출되어 '22년 9월, '22년 11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 원회에서 두 차례 심사보류 되어 '23년도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금 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6억 4.3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관련 법령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 이후 출자·출연 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출연금을 포함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편성요 청된 출자·출연금은 관련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 동하여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Ⅵ.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

1. 성과계획서 검토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표 6-1〉성과 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p.58
- 다만, 관련 법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해당 법에 근거하여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사료되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예산 요구 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①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하고, ②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③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 '16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예산 확정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사례가 없고, 조직개편 (신설·변경·폐지) 및 추경예산 편성 후에도 최종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①예산변동으로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정해지거나 ②조직이 신설되었음에도 소관 성과지표가 수립되지 않거나 ③조직이 폐지되어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가 필요 없게 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재정활동 성과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소홀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기준은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주요 성과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 록 정하고 있는 바.
 -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47조 1,905억원)보다 6.6%, 3조 922억원이 증가된 50조 2,827억원으로 조정 요청하여 성과계획서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성과계획서를 수정 반영하지 않을 경우, '23 회계연도 결산시점에 성과보고서상의 성과목표, 지표, 예산액 등 주요 성과정보가 성과계획서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 성인지예산제 검토

- 성인지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에 반영하는 제도로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 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책무를 부여한 바,
 - '22년 11월, '23년도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수정 의결되었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보다 6.6%, 3조 922억원 증액된 예산으로 경정요청하는 것은 물론, 성인지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신규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어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 관련 법령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 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2년 11월, '23년도 예산 안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1개) 와 특별회계(12개), 기금(17개)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 의회의 심의를 거쳐 '23년도 예산이 수정 의결되었고, 금번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의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6.6%, 3조 922억 증액된 50조 2,827억원으로 경정요청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 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6-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7	_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23년도 예산안)	'23년도 본예산 (의회의결) (A)	'2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증 감 (C)=(B)-(A)	증 감 률 (C)/(A)
<u>ネ</u> o	총 계		47,205,227	47,190,512	50,282,757	3,092,245	6.6
	일 회	반 계	33,524,517	33,466,084	36,173,581	2,707,497	8.1
	튀회	별 계	13,680,710	13,724,427	14,109,175	384,748	2.8

- 다만, 관련 법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예산안 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에 해당되어 서울시가 중기지방재정계 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규칙은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 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바.
 - 관련 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인 **행사성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반영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6-3〉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p.1 (일부발췌)

○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12건, 74억 1,300만원에 대해 사업부서는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인 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⑤투자심사를 의뢰하여 ⓒ투자심사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④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23년도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사업부서는 본예산 편성시기를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지침의 사전절차 미반영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를 근거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법령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는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법적 사전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은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 서울시는 회계연도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부서에서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사유·시기·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6-4〉행사성 사업 증액 편성현황 (3억원 이상)

(단위: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 예산	증감액	추경안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주1)}	위 : 핵단권) 투자 심사
경제정책실	뷰티산	업육	성행사	추진	1,080	100	1,180	Δ	'21. 9.30
문 화 본 부	보 신	각	타 종	행 사	393	1,940	2,333	Δ	'23. 5. 3
"	덕수궁 욍	궁수문	장 교۴	식 재현	2,141	53	2,194	Δ	'21. 6.24
"	숭례문	파	수의식	재 현	436	12	448	Δ	'21. 6.24
"	책읽는	서을	울광장	운영	2,650	290	2,940	Δ	'22.10.20
"	광 화 문	- 책	마당	운 영	1,120	500	1,620	Δ	'22.10.20
관광체육국	(가칭)	송	현동 달	빌 <i>축</i> 제	_	1,792	1,792	Χ	'23. 5. 3
"	서울 뷰티	티관광	페스타	벌 개최	1,225	200	1,425	Δ	'21. 9.27
디자인정책관	서울라이	트 광	화 빛축	세 운영	2,330	270	2,600	Δ	'23. 6. 9 ^{₹2)}
푸른도시여가국	2024	서울국	·제정원	박람회	_	1,255	1,255	X	'23. 3.31
한강사업본부	책읽는 현	한강공역	원 조성 '	및 운영	_	520	520	X	'23. 5. 3
"	로맨틱 7	한강 트	<u> </u> 리스마	스 마켓	_	500	500	X	'23. 5. 3

- ※ 사업비중 행사운영비(통계목) 예산만 표기
- 주1) 표기 설명 : △ (기정예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추경예산액-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X (신규 투자사업으로 예산전액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 주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07 ('23. 6. 9), "2023년 제2차 재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결과 알림"
 - '23년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 :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 (재검토)